

정책연구 2012-1

#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I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머 리 글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 최빈국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로서 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며 이주해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위상의 변화는 급격한 국제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문제, 육아 및 자녀 교육문제,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혈연을 강조하면서 타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며, 이와같은 사회적 편견은 다문화가족에게는 차별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우리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제도의 효과는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의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은 2010년도의 9개, 2011년도의 8개 정책과제와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이어 금년에도 9개의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다문화포럼을 발족하여 5회에

걸친 포럼에서 저희 연구원의 정책연구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거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연구와 실태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의 변평섭 이사장님, 이인구 상임고문님, 이사님, 후원협찬기관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전문가 여러분과 원활한 연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운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원 장 조 원 권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조사를 통한  
국제적 공조협력 방향

연구책임자: 조 원 권(우송대학교)



## 연구 요약

- 결혼이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이주의 주요동기가 본국에 남겨둔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경우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유지에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시스템, 즉 결혼이주 알선 시스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문화가족의 해체 등 부작용을 줄이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와 결혼이주국가인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해외 결혼이주에 대한 국가정책, 제도, 알선이나 규제, 지원 여부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분석
- 우리나라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현지 결혼이주에 대한 정책, 제도 및 알선 실태조사
- 우리나라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결혼중개시스템 실태 및 관련제도 조사를 검토하여 국제결혼의 국제협력 강화 방향을 제시함





# 목 차

I. 연구 개요 .....	1
II.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3
1. 법·제도적 현황 .....	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가.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의 보완 .....	4
나.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문제 .....	5
III.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8
1. 개황 .....	8
2. 혼인관련 정부조직 .....	9
가.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U) .....	9
나. 결혼지원센터 .....	9
3.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법 .....	9
4. 베트남 사회에서의 이혼시 문제점 .....	10
IV.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	12
1. 개황 .....	12
2.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관련법 .....	14
가. 가족 및 혼인법 .....	14
나. 외국인과의 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 .....	14

<b>V. 라오스의 국제결혼 중개시스템</b> .....	<b>17</b>
1. 개황 .....	17
2. 정책 및 법·제도 .....	18
3. 현실적 실태 .....	20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21
가. 문제점 .....	22
나. 개선방안 .....	22
<b>VI. 국제적 공조협력 필요성과 방향</b> .....	<b>24</b>
1. 국제결혼중개업의 국가간 법 규정과 평가 .....	24
2. 국제결혼 관련 국제 공조 필요성 .....	25
3. 국제 공조협력 방향 .....	26
참고문헌 .....	28
[부록] 국제결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가이드 .....	29

# I. 연구 개요

- 결혼이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이주의 주요동기가 본국에 남겨둔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40%를 다문화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이혼급증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자 본국의 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에 대한 동기나 목적 등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경우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유지에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모계사회의 유풀이 강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및 혼인후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나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음에 따른 갈등도 결혼생활 유지에 장애로 작용하며 혼인해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결혼이주 알선 시스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문화가족의 해체 등 부작용을 줄이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해외 결혼이주에 대한 국가정책, 제도, 알선이나 규제, 지원 여부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분석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현지 결혼이주에 대한 정책, 제도 및 알선 실태 조사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포럼위원이자, 현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3개국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현지에서 총괄하여 결혼중개 및 결혼이주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 알선시스템 등 실태 조사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결혼중개시스템 실태 및 관련제도 조사를 검토하여 국제협력 강화 방향을 제시함

## Ⅱ.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1. 법·제도적 현황

-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은 처음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소규모 업체 난립으로 각종 폐단이 발생하게 되며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위장결혼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키 위한 법적 규율을 마련키 위해 2007년 결혼중개에 관한 특별법 성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국내결혼 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 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하고 결혼중개 업체의 겸업금지, 결혼중개시 서면계약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규정된바 있으며 2010년에는 동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대방에게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통·번역 서비스 의무화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할지자체가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신고필증 등의 게시의무(동법 제8조), 명의대여의 금지(동법 제9조), 계약내용의 설명의무 및 계약서의 교부의무, 계약서의 보존의무(동법 제10조), 신상정보 제공의무(동법 제10조의 2),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동법 제10조의3),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동법제11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정보제공의 금지(동법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의무(동법제 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인권침해사례와 상대방 배우자에 관한 허위 정보제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 관한 여러 종류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의 대부분은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은 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

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함(동법 제2조)

- 동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적으로 신고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결혼중개업에 비하여 그 설립을 다소 엄격하게 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이며, 일정한 교육을 받기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도 결혼중개업제도에 대한 강의 1시간,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강의 1시간, 결혼중개업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강의 1시간, 상담 실무 강의 또는 실습 1시간으로서 모두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시간을 보면 사실상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교육내용도 국제결혼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 결혼중개업제도 및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에 관한 결혼중개업의 일반에 대한 강의에 그치고 있음
- 이와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할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제도는 필연적으로 자격미달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제결혼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윤추구를 위한 편법 국제결혼알선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의 보완

-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다수 심의 중에 있음
- 동법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이용자가

결혼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의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그러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보존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한 후 공증하게 하는 방안,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신상정보의 제공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도록 하는 한편,

- 허위로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제 결혼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권 침해적 결혼중개행위를 처벌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묻지마 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도 결혼사증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2011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 위 개정 법률안들은 2010년 발생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출신 신부를 한국인 남편이 결혼 후 8일 만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서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중개업의 엄격한 관리를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나.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문제

- 국제결혼중개제도와 관련하여 국제결혼 대상자 상호간에 있어 신상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국제결혼에 의한 혼인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상호 신뢰의 기반이 됨
- 결혼대상자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 정신병력, 형사처벌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 결혼은 쉽게 파탄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파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개인의 판단문제에 귀착하게 되는 것일 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핵심문제는 결혼대상자들에 대한 상호간 정확한 신상정보에 있다고 할 것임

-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2항에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후 동법 제26조 벌칙 조항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10조의 2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로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혼중개업자는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되며,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그러한 서류가 허위의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결혼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무가 없는 결혼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혼인의 성사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대상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게 되어 혼인이 파탄으로 귀결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임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국제결혼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에 한정된 범죄경력 조회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신상을 알 수 있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란 국내결혼과 달리 언어와 관습, 문화, 경제수준 등이 상이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이미지에 의하여 개인의 환경에 대한 오인의 소지가 많기 때문임
-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제도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관련 확인의무와 확인사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자격요건과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의 폐단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Ⅲ.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1. 개황

- 베트남 여성이 외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대만남성을 주 대상으로 하였음
  - 베트남이 자본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면서 대만자본의 베트남 진출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결혼시장에서 밀려난 대만의 남성 노동자와 농민들 중 일부가 베트남 현지중개업자들이 개발한 중개시스템에 의해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음
- 베트남 여성의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은 1960년대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기간 한국인 남편을 따라 입국한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베트남 신부들이었음. 그 후 중단되었던 양국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경제,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은 베트남여성의 한국남성과의 결혼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베트남에서 소개된 한국 드라마가 총100여 편에 이르렀음
-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급증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베트남에서 외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하고 중개하는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바로 대만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공급하던 구조가 그대로 한국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제결혼비용이 저렴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윤이 많다는 점,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일시에 많은 여성을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베트남 여성들이 대부분 농촌출신으로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농촌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점, 중국에 비하여 언어적응과 외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가출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피부색에서 차이가 많지 않아 자녀의 피부색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 베트남의 결혼적령기가 20세 전후로 결혼하려는 여성들이 대부분 젊고 초혼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 혼인관련 정부조직

### 가.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U)

- 전국의 1,300만 명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산하의 지방정부인 성(省)단위와 지구단위에 산하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양성 평등을 지원하는 조직임

### 나. 결혼지원센터

-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 일부조항의 시행령 제68호 명령(Decree 68)」에 의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를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당 기관인 여성연맹 산하에 결혼지원센터(Marriage Support Center)를 설립하고 베트남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결혼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있음. 현재 여성연맹 산하의 결혼지원센터는 하노이, 하이퐁, 다낭, 람동, 동탑, 호치민 등 전국에 총13개성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여성동맹이 국제결혼의 통로로 인정되었지만 현실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국제결혼의 통로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호치민 결혼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국제결혼 지원 실적이 2005년 51명, 2006년 110건, 2007년 60건, 2008년 8월 45건에 불과함

## 3.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법

-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은 명시적으로 불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 제11장은 외국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정 관계에 관하여 제100조 내지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법 일부조항의 시행령 제68호 명령(Decree 68)28)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으로서 국제결혼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결혼의 허가와 등록은 지방정부인 성(省)급의 인민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였음
- 국제결혼의 중개와 지원은 여성연맹과 그 산하기관인 결혼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외교 영사권에 관하여는 외교부가, 외국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확인은 공안부가, 외국 요소가 있는 혼인의 국가 관리는 각급 정부기관의 권한으로 하였음
-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동은 명시적으로 불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집단 맞선이나 베트남여성의 단체합숙 등은 집회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불법적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음
-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이 베트남여성의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적응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이것은 베트남 실정법에 위배될 수 있음

#### 4. 베트남 사회에서의 이혼시 문제점

##### ○ 사회적 낙인과 가족의 수치

- 베트남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특히 국제결혼 이후 이혼한 경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선은 더욱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귀국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음
- 지역별로는 메콩델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고, 일부는 딸이 결혼한 이후에 사위나 그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혼한 자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부 베트남의 천주교 배경을 지닌 가족의 경우에는 이혼을 반대하고 이혼 후 귀국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 ○ 경제적 곤경과 자녀양육 문제

- 이혼 후 귀국한 여성 중 빈곤층 출신자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들은 귀국한 후에도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직업도 찾기 힘들. 국제결혼을 선택한 빈곤층의 다수가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베트남 현지 전문가

들의 공통적인 진단임

- 결국 많은 경우 고향 마을에 머물기보다 대도시로 다시 나가 임시고용직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찾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자녀 양육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며, 이혼 후 귀국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고향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음

## IV.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 1. 개황

- 캄보디아 여성들은 주로 유럽 남성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1970년 대 크메르 루즈 정권의 학살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캄보디아 난민들이 북미와 유럽에 정착하였고 이들의 2세가 본국에서 배우자를 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의 캄보디아의 국제결혼은 상업화된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지인의 소개에 의한 중개나 연애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 2005년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하나의 중국'정책(One-China policy)을 따르면서 캄보디아 주재 대만 공관이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대만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베트남에 있는 대만 공관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대만정부에서도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비자발급을 잠정 금지하면서 대만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바 있음
- 2006년부터는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제68호의 시행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중개업을 불법화하여 단속하자 이 단속을 피하여 활동하던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캄보디아를 새로운 국제결혼시장으로 인식하고 캄보디아 국제결혼시장을 개척해 나갔고, 그 결과 캄보디아 국제결혼여성의 80%를 한국 남성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인남성과 베트남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6년의10,128건에서 2007년6,610건으로 35%가 감소
  - 같은 기간의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6년 94건에서 2007년 1,804건으로 3.5배로 증가하였음
- 캄보디아는 국토는 남한의 1.8배이지만, 인구는 1,450 만 명 밖에 안 되는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로 자국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
  - 1997년 이후 캄보디아가 안정되면서 외국인관광객 에 의해서 아동 및 여성 성매

때, 성착취, 인신매매가 해외에 크게 알려지게 되면서 각국의 비영리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여성 및 아동의 성착취 및 인신매매에 적극적 대처에 미흡하다”고 비판 하였으며 미국은 다년간 인신매매보고서등을 통해 캄보디아정부가 인신매매에 관하여 적절한 예방 및 피해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압력을 가하였음

-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하나로서 2008년 3월 27일 ‘국제결혼 관련 업무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단조치는 2008년 11월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약 7개월간의 금지기간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캄보디아 여성의 상당수가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09년 9월에는 한국인 중개업자가 1명의 한국남성에게 25명의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 3월 단체맞선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등록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4월 21일 국제결혼관련 절차를 개정하여 재개하는 등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3월 27일 캄보디아정부가 국제결혼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후, 2008년 11월 3일에는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 국제결혼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 하고 나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재개되었다. 이에 때를 맞추어 2008년 12월 12일에는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캄보디아 내무부에 단체로서 등록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 이 협회는 자신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국제결혼절차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고 캄보디아인과 결혼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이 협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활동하였으나
  -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는 캄보디아인과 한국인 간의 결혼중개를 독점하여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는 동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2009년 2월3일에 캄보디아 외교부가 “캄보디아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협회나 단체에 가입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바 있음

## 2.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관련법

### 가. 가족 및 혼인법

- 캄보디아 ‘가족 및 혼인법’은 1989년 7월 17일 캄보디아 국회에서 비준되고 7월 20일 서명을 받았다. 이 법은 헌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였으며(제1조) 총 122개 조문으로 구성된 캄보디아의 가족관계와 혼인에 관한 일반법임
  - 외국에서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하여는 제4장 제79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준거법과 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에서의 결혼은 거주국가의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등기담당자에게 출석하여야하고,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사이에 법에 따라 정식결혼을 한 경우에는 캄보디아 법으로 유효한 결혼이 된다.(제79조)
  -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제80 조). 외국인과 캄보디아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캄보디아 국내에서 혼인무효를 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법률에 의한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내에 거주하는 어느 한 배우자가 결혼의 무효를 제기할 때 캄보디아 법원은 그 결정을 할 자격이 있다(제81조)

### 나. 외국인과의 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

- 캄보디아 정부는 2008년 11월 3일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캄보디아정부가 외국인과의 결혼방식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를 지니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캄보디아 왕국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제2조)
  - 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 된



다.(제3조)

- 위장결혼, 강제적 착취나 인신매매 또는 성착취를 위한 사기결혼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제4조)
  - 캄보디아국민과 혼인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혼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체류하여야한다.(제5조)
  - 캄보디아 국민과 혼인하기 위해 외국인 당사자는 혼인 신청서, 유효한당사자의 여권 및 캄보디아 입국 비자 사본, 외국인의 국가 당국이 발급한 독신 또는 미혼·재혼 증명, 외국인의 국가 당국이 발급한 건강 증명, 외국인의 국가 당국이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증명을 첨부하여 외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 이 때 외국인의 국가당국이 발급한 생활수준 보장용 직업증명서, 여권사본, 독신 또는 미혼·재혼 증명서는 캄보디아 왕국 주재 외국인 당사자 소속국가의 대사관이나 대표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6조 후단)
- 새로운 시행령은 혼인증명서 발급 과정에 인신매매 방지 주무부처인 내무부를 새롭게 참여 시키면서 국제결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 당사자가 시행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외무부에 제출하면 외무부는 제출 서류의 적법성 및 진정성을 심사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외국인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서 등을 내무부와 여타 관련 기관에 송부한다.(제6조 및 제7조)
  - 등록허가 기관으로서 내무부는 외무부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를 등록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외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캄보디아인 당사자의거주지 지방행정기관 담당자에게 혼인 신청 사실을 통보한다.(제8조)
  - 서류 심사 및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당사자가 캄보디아인 당사자의 거주지 지방행정기관 담당자에게 결혼신청서를 제출한다(제9조). 단위 호적행정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결정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없을 시 결혼 공고문을 작성하여 10일간 부착하고, 10일 이후까지 양 당사자의 혼인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는 혼인 의식을 올릴 수 있다.(제10조)
  - 당사자들은 2명의 증인과 함께 지방행정기관 당사자 앞에서 직접 등록을 통해 혼인 약속을 함으로써 결혼은 합법적으로 성립된다.(제11조)

- 시행령이 규정한 이러한 절차 즉, 심사기관인 외무부 5일 → 등록허가기관인 내무부 5일 → 발급기관인 동사무소 13일을 거쳐 합법적으로 결혼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당사자는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최소한 23일을 체류하여야 한다. 23일간의 장기체류가 어려운 경우라면 외무부 서류접수, 내무부 서류접수 및 인터뷰, 지방행정기관에서 결혼신청을 각 각 처리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3번 입국하여야함
- 따라서 4박 5일 내지 5박 6일 이라는 관행화 된 결혼일정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임

## V. 라오스의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 1. 개황

- 부산에서 있었던 국제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의 살해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제결혼정책이 2011년부터 새롭게 바뀌어 결혼 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며 국제결혼을 대행하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강화된 결혼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제결혼의 물결이 이제 서서히 라오스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 두고 '라오스의 국제결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8년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통하여 미국인이 꼭 여행해야 될 나라 1위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라오스의 존재와 문화를 그리 잘 알지 못하던 한국의 관광객과 아울러 라오스인들과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관심이 라오스에 집중되어지면서 얼마 전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에서 주로 활동하던 결혼 중개업체들까지도 속속들이 라오스로 들어와 본격적인 라오스인들과의 국제결혼 대행 중개업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빈도수가 현재까지는 높지 않은 라오스에서도 이러한 개방화 물결의 흐름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1994년에 제정된 외국인과의 결혼법률에 근거한 서류적인 신고절차로서 국제결혼 심사만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위앙짠)에 주재하고 있는 각 나라별 대사관에서 자국의 국제결혼법률에 의거한 엄격한 심사 절차 외에는 라오스에서 직접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달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자세히 하거나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행정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임
- 따라서 앞으로 라오스는 지금의 개방화 물결로 인한 인근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

아의 국제결혼 피해사례들을 겪게 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피해의 한도와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라오스정부와 외무부 및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그리고 다문화가정정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관과 현지 결혼중개업체와 교민들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동적인 노력으로 바람직한 국제결혼의 사례를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임

## 2. 정책 및 법·제도

- 한국은 이미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이 다방면에서 강화되며 개선책 또한 많은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언하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도 얼마 전 자국민을 위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법률을 개선하며 안정된 결혼중개정책 및 자국민 보호와 국제결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1994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 외에는 국가적인 법률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는 1차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만들고 도장만 찍으면 인터뷰의 과정도 없이 서류를 심의 하는 기간 동안의 조사비용 명목으로 얼마간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적당한 시일이 지나면 다른 일반적 심사와 준비에 관한 심의 없이 국제결혼을 승낙하는 실정이며 라오스 정부 및 관계부처의 행정능력이 아직은 미흡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라오스인 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으로 정식 입국하기까지는 약 석 달에서 넉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점이라면 이점이고 더딘 업무처리하고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임
  - 물론 이 또한 급행료를 지불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국제결혼에 관한 정부 승인서류를 받아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석달의 시간을 경과한 후 라오스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에 따른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 이 수립되어 가장 국제결혼의 사례가 많은 나라인 중국, 베트남을 비롯하여 특정국가 국민과의 국제결혼시에는 한국정부의 국제결혼정책 설명과 피해사례에 대한 사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과 행정적, 법적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라

### 오스 국제결혼정책의 현주소임

- 비자 발급 심사 시에도 범죄경력, 병력, 경제적 능력, 혼인 경력, 혼인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방면에서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라오스는 이 또한 미흡한 상황이며 오직 라오스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서류심사 시에만 한국의 국제결혼법률에 의거한 일부의 심의와 심사가 진행 되고 있음
- 라오스에는 아직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미흡하기에 국제결혼 대상자인 라오스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진정성과 개인의 병력과 정신감정 및 범죄사실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객관적 사실 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마지막으로 무등록으로 국제결혼증개를 감행하는 외국 및 외부의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안전 인식도 없으며 이러한 라오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결혼 대행업체를 단속하거나 적발하여 법률적 조치를 감당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심도 없는 실정임
- 한국인이 라오스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만 준비하고 라오스에서 결혼대행업체를 통한 상견례 및 예식을 거행한 후 석 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출국 하여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음
  - 여권,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성병 및 에이즈, 정신과), 범죄경력증명서(성범죄 경력자는 국제결혼 자체가 불가), 직업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월소득명세서 등), 1년 동안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향후 경제활동계획서(현지에서 요청시), 거주지의 실내외 사진 및 소유차량 사진 등
- 라오스 주재한국대사관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를 통하여 라오스인들과의 국제결혼을 심의하고 승낙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에서는 외무부를 통한 아래의 서류작업만을 감당하고 있음

- 이렇듯 양 기관의 서류만 준비하면 라오스인들이 한국으로의 결혼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며 일정의 행정 비용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결혼을 진행할 수가 있음
  - 라오스인과의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지침을 정하여 라오스주재 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과 미국 국민에게 국제결혼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절차를 자세히 알리고 있음

### 3. 현실적 실태

- 이제 국제결혼은 라오스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많은 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갈등과 문제는 이제 라오스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며 피부로 느끼는 시절을 맞이하였음
  - 한국은 결혼을 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높은 추세로 나타나는 가운데 실제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지만 반면 국제결혼의 이혼 진행률 또한 매년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그 중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10쌍 중 1쌍이라 치면 그에 못지않게 이혼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임
- 이렇듯 국제결혼추세도 날로 변하고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새롭게 국제결혼의 대상국가로 떠오르는 라오스의 결혼현실은 주변국의 어둡고 힘들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미 주변국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더 빠른 접근과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다가오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적 요소와 시도들은 라오스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결혼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범적인 가정이 있는 반면에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야기되는 문제점과 갈등들이 라오스인과의 국제결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 가까운 예로 결혼만 해서 한국에 가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결혼중개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우는 라오스여인의 삶과 한국에 가기만 하면 부자로 일을 심하게

하거나 힘들지 않고 편안하기만 할 것 같은 이상주의와 환상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불만과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언어습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전달에서 일어나는 갈등사항과 한국의 문화구조를 이행할 수 없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처럼 이미 한국과 국제결혼이란 관계를 통하여 한국 내 다문화가정을 이룬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서도 찾아볼 수 있음

-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는 라오스인들은 현재 약 60여 가정(2011년 10월)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후속관리 부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한국주재 라오스대사관에서도 라오스의 현실적인 부분이나 공관의 행정인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결혼 전과 후의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부족한 실정임
- 하지만 국제결혼이 성사되어 이주하는 라오스여성의 인구수가 인근국가인 베트남보다 훨씬 못 미칠지라도 라오스를 향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지속적인 접근과 그에 따른 알선 행위들의 적극화 등을 통하여 그 숫자는 조만간 한국 내 국제결혼 증가율은 베트남의 증가율 폭보다 더 높아지리라 예상되어지며 아직까지는 국내 현행법상 라오스인들의 국내 취업비자 취득이나 사업적 진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국회를 통한 외국인고용촉진 법률이 라오스에도 적용 되어지는 시점에는 그 숫자가 한국의 국제결혼에 새로운 판도와 흐름으로 이어지리라 예상됨

####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라오스의 국제결혼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에 관한 관심도와 결혼정보의 확산 및 결혼의 기회는 더 많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이해 및 좀 더 좋은 국제결혼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은 아직 없는 실정임
- 이에 간략히 라오스 내에 현재 분포되어 있는 국제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변국에서 겪었던 실패사례를 극히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국제결혼

의 모델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가. 문제점

- 언어력 부족으로 인한 갈등
- 타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심화
-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상사
- 갈등 및 문제 해소를 위한 중간적인 기관 부재로 인한 중재 결렬
- 라오스도 최근 불법 결혼중개업체가 인터넷카페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점조적으로 성행
- 결혼대행업체의 결혼 성사 전 부족한 준비(언어습득, 타문화이해, 법률, 실패 사례 등) 및 정확한 정보 미 전달 사례 성행

## 나. 개선방안

- 1) 양국가간 사전 소양교육 의무화 정책 수립
-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라오스인은 사전 소양교육을 받기위해 양국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감당하며 한국어의 습득 및 한국문화 이해와 기초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는 노력을 기울어야만 할 것임
    - 만약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결혼희망자의 비자 절차 심의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건전한 결혼풍토를 조성함
    - 또한 이러한 노력은 무분별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무등록 중개업체 난립을 막고 불법영업행의 단속과 관리부분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려됨



## 2) 심의 기관 및 준비 기관 설립 도움을 위한 정책 수립

- 최종적으로는 각 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을 통하여 국제결혼에 관한 심의를 결론 내리며 승인을 하지만 그 전에 양국가간 비영리 국제결혼 담당 준비기관을 선정하고 1차 심의 기관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사전 언어교육 및 타 문화 이해에 대한 훈련과 법률이해 및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한 사전 숙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준비되고 인정되는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에 한하여 국제결혼의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일들은 각 나라별 현재 라오스 내 문화 및 비영리 교육 사업을 감당하는 기관을 엄중히 선별하여 양 국가에서 그에 합당한 자격과 권위를 부여하고 일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도움과 협력을 통하여 공식적인 통로를 개설하며 창구 일원화 체제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로움과 함께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사전에 이를 발견하고 근절시키며 개선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 현재적 상황에서 복수의 국제결혼중개업을 위한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별 문화센터의 개념을 가진 기관이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그 기관에 국제결혼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여 도움과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가장 이상적이며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라 사려됨

## 3) 양국가간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 공동 재정

## 4) 국제결혼을 심의하는 관계부처 신설 및 기관 확대

## 5) 야기된 갈등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및 상담기관의 신설

## VI. 국제적 공조협력 필요성과 방향

### 1. 국제결혼중개업의 국가간 법 규정과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국. 내외 결혼중개업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율하여 합법화하고 있는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명시적으로 결혼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중개에 따르는 맞선 등 결혼중개업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오스는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현상의 한 축이 결혼중개업체에 있음을 인식하고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의무와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결혼중개업에 대한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는 국제결혼에 있어 송출국과 수용국간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국제결혼 당사자 간에도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들어 낼 여지가 많은 점, 특히 결혼 해체 시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 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결혼중개업 자체에 대한 불법성으로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임
  - 특히 금번 베트남 현지민들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와 결혼 해체시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는 이제 국내문제를 넘어 주요 결혼이주여성 송출국과의 공동 법제화 등 국제결혼 관련 법제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등 입법화에 대한 당사국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임

- 결혼 해체시 야기될 수 있는 국적문제, 자녀 양육과 귀속문제, 체류자격문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 필요

## 2. 국제결혼 관련 국제 공조 필요성

-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율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은 다양한 채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중개업체가 그 중심에 있으며 결혼중개사의 결혼정보업체의 영리목적에 따른 묻지마 성사주의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은 결국 양국 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이혼, 가출, 별거 등 다문화가족 해체의 원인제공의 단서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여 양 당사국간의 곤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음
- 결혼중개에 대한 법적 허용여부가 나라별로 상이함에 따라 불성사시에는 결혼추진 양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이나 구제가 어렵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되며 결혼 해체 시에도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실정임
  - 결혼중개업체의 과장, 허위 신상정보 제공이 원인이 된 결혼해체의 경우 특히 여성 측의 피해가 극심한 사례가 대부분임에 따라 이들 여성 송출 중점국가와의 공동 대응 모색이 필요함
  - 결혼 해체시의 해체에 따른 법적 소송의 진행문제, 결혼해체 양당사자의 인적 청산과 그 자녀들의 양육문제, 이주여성의 불법 체류문제 야기 등 양국가간에 걸쳐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됨
- 국제결혼 이주에 따른 양 당사국 국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고 유지시키며 불가피한 사유로 해체 시에도 해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체에 따른 법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국가간 사전교육 시스템 및 결혼 중개에 대한 공동 제도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 국제결혼 중점 송출국과의 공동 국제협력 강화방안 추진 필요성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우리나라로 결혼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송출국들과의 국제결혼 이주에 따른 결혼형성 및 과정에 있어 원만하고 순조로운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결혼중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도화하는 공동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큼
  - 결혼해체 등 불행한 사태 발생 시에도 그 당사자와 자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정리, 자녀의 양육이나 귀속 문제, 체류자격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공동 제도화 및 법제화 하는 방안 추진

### 3. 국제 공조협력 방향

-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보면 국제결혼에 이르는 중개통로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평균 동거기간 4년 만에 약 30%정도가 해체하게 되며 이혼한 결혼이주 여성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이들을 치유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 성사 비중이 높고 그들의 영리추구를 위한 묻지 마식 단기 졸속 혼인성사는 혼인 후 결혼해체를 야기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당사국간 규제와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함
- 결혼해체를 줄이는 정책과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고 이주희망여성이나 친정가족들이 기대하고 있고 걱정하는 경제적 활동을 알선하고 취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 부부 및 시댁가족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확충과 적절한 시행, 언어 및 사회 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언어 및 문화교육 등의 이슈에 대해 국제결혼 과정단계 및 결혼 성사 후 국내 체류 시 등 다단계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발굴하고 프로그

램화 하여 시행하는 것임

- 일례로 결혼이주 중점 송출국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필리핀과 같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있거나 예정인 여성들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문화센터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이를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위한 의무과정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 및 상호이해교육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상기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결혼형성 시 중개비중이 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쌍방의 신상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배상을 강화하여 결혼형성단계에서 개제될 수 있는 거짓, 외국 된 정보에 의한 결혼 후 상호신뢰를 깰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법적, 제도적 보완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결혼해체가 된 경우라도 양 당사국 국민인 이혼 당사자들의 자녀문제, 국적문제 등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공동 법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부록. 국제결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가이드 참조)

## 참 고 문 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2008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법의 날 기념 심포지엄-함께 해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2009.4.22)].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설동훈외, 여성가족부, 2006.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김이선외, 여성가족부, 2010

2009년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국제결혼 중개업 건전화방안, 김두년외, 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조원권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2010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자격, 박홍식, 충청다문화포럼, 2011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과제, 박진근, 충청다문화포럼, 2011

행전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2010. 6.

2011년도 외국인정책심의, 법무부, 201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부록] 국제결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가이드

가.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정부에 등록된 단체인가? 아닌가? 정도로 객관적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반드시 국제결혼중개업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 한편 중개업체를 방문한 후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믿을만한 업체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다음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경영윤리에 관한 사항이다. 결혼중개업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확인한다면 해당 업체가 내가 선택해도 좋은 국제결혼중개업인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안에는 다음의 자료를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 ✓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 ✓ 보증 보험 증권

○ 이와 같은 자료들을 처음 결혼중개업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중개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결혼중개비의 일부를 신부 측에 넘기고 신부 측에게 한국에 결혼해서 오게 되면 신랑이 본국에 일정한 금액의 송금을 약속했다든지 일자리를 구해준다든지 하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에서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결혼해 온 경우,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 ✓ 시장가격보다 너무 싼 중개료의 경우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검토한 후 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보다 신뢰할 만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데 안전한 방법이다.

**나.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모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상호, 대표자 성명
- ✓ 중개 사무소가 소재한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결혼 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 이용 약관
- ✓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

○ 가, 나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이용하며 서면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 현재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 계약서를 쓰고 있는 업체라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 ✓ 수수료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



-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 √ 이용자는 상대 예비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 √ 그 외에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이 예측되는 사례들을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합의하여 넣는 것이 좋다. 예컨대 '경비'부분과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배상책임' 등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은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밖에 현재 다른 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 계약서에 대해서 이용자는 내용이 잘 이해될 때까지 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어 계약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 결혼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계약, 이면계약을 하지 않도록 한다.
  - √ 계약서는 전자계약서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라.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이 충분히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교부를 받는다.**

- 계약체결 시 약관부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정도는 분쟁에 대한 갈등 조정 시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은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이용자가 중개업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
- √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서의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자료를 받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기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다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천만 원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마.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 사항, 배상책임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와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행동하도록 한다.**

○ 해약과 해지 그리고 수수료나 회비 반환 갈등은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본인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확인한 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 분쟁 사례 1) 해약 또는 해지 환급 거부에 따른 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으나 성혼이 되지 못한 채 귀국하였음. 현지에서 7일 맞선을 보았으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현지에서 계속 맞선을 주선하겠다는 중개업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귀국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부감을 찾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실제경비(항공료, 숙박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반환을 요청했으나 결혼중개업체는 이를 거부하였다.

○ 대안: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맞선 이후에 해지된다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 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에 따라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 또는 해지와 관련한 많은 갈등은 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후, 또는 6개월 이후에 돌려준다고 업체가 통보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분쟁 사례 2) 추가비용에 따른 분쟁 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다.

계약서에는 “추가비용없음”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혼이 거의 성사되어 출입국관리소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안: 이용자는 ‘국제결혼 중개계약서’ ‘경비’ 부분에 향후 발생될 추가비용 가능성에 대해 중개업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해당 사항과 집행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갈등소지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현지에서 요구하거나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역시 분쟁의 1차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 분쟁 사례 3) 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사례

- 구체사례1: K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000만원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후 결혼식을 마쳤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신부가 가출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를 업체에 이의제기했으나 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 구체사례2: S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후 총 000만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필리핀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 신부가 입국한 후 현지 가족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남편에게 요청하다 거절하자 가출하였다. S씨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돈만을 요구한 여성을 소개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물어 대금환급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재 알선을 해주겠다고 거부하였다.

- 대안: 결혼 파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체로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통상은 신부가출이나 이혼 시 6개월 이내 재 알선 또는 재 결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 『분쟁 해결 방법은 민법에 의한 소송이다.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향후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sup>20)</sup>**

-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결혼할 예비 배우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 혼인경력
  -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 포함)
  - ✓ 직업
  -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이 부분은 갈등이 가장 심한 내용 중 하나로 사실 상 혼인 당사자들의 정보를 결혼정보업체가 정확하게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가구통계 등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고 신

뢰성이 낮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증명서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이용자와 중개업자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닿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최대한 중개업체로부터 객관적 자료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인의 신상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받아야 하며, 반드시 사본과 번역본을 동시에 받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서류들은 갈등 조정을 위해 결혼중개업으로부터 혼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다음에 열거한 자료들은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 ✓ 해당 국가의 혼인관계 증명서
- ✓ 건강증명서
-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 범죄경력회신서
- ✓ 기타 필요한 자료 요청

**사. 중개업체 이용료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총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한국에서 계약금, 현지에서 중도금, 한국에서 잔금으로 나누어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번에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현지에 맞선을 보러 간 후 중도금을 지불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한국에서 잔금을 지불하는 것을 권유한다.

**아. 예비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앞선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해 허위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계기가 부실한 통역에 의한 사건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 **분쟁 사례 4) 통·번역의 오류에 의한 분쟁사례**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으로 맞선을 보러 떠났다. 계약 조건에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확실히 하였으나, 현지 맞선에서는 일대일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 예비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 궁금한 여러 질문을 하지 못했다. 또한 맞선 본 상대방이 A씨에게 결혼 이후 자신의 집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어서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집매달 송금해 줄 수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통역의 한국말이 서투라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 이후 A씨가 본국에 송금할 생각을 하지 않자 결혼한 여성은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화가 생겼다.

- 이 경우는 부실한 통역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비신부가 통역에게 관련된 사항을 말했으나 통역이 이를 확실하게 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지 여성들과 결혼할 때 통역하는 사람들이 혼인 이후 친정에 한국에 있는 신랑이 경제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것을 약속했다는 등 허위 정보를 주는 경우도 피해사례에서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통역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

- √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인의 경우는 국어로, 외국인의 경우 이용자가 지정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계약 사항에 전문 통역·번역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맞선 보기 전에 현지의 통역자와 전화통화를 사전에 하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한 후 현지로 갈 것을 권유한다.

**자.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가를 업체로부터 반드시 최**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갖은 후 혼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결혼이민 사증의 발급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결혼이민 사증의 발급기준 등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유무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유무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사례 1: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사증이 취소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 사례 2: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1주일에 한번 만나는 등정상적인 결혼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증취소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 지극히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국제결혼중개업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확인은 이용 당사자들의 주의를 통해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범죄경력에 대한 파악, 연체·부도·파산자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5년 이내에 2회 국제결혼한 자 등에 대한 정보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보요청을 이용자 스스로 할 것을 권고한다.

**차. 사증발급 및 입국수속 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피해사례 중 입국지연에 의한 피해사례가 한 피해유형이 될 만큼 상당히 빈번히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신생업체나 소규모 업체로 서류처리가 복잡해지면서 서류처리가 깨끗하지 못해 지연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혼인한 외국 신부들이 서류를 챙겨서 보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용자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 ☞ 분쟁 사례 5) 입국지연에 관한 분쟁 사례

A씨는 현지에서 B씨와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B씨의 사증발급을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A씨와 혼인한 현지 배우자를 통해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는 20일 이내에 사증이 발급되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지에서 혼인한 신부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 A업체의 대표는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공관에 연락했으나, 한국공관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급사유를 말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사증발급이 한 번 거부당하면 재신청하는 데는 6개월이 더 소요된다. 이 경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입국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이 경우는 A씨가 한국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신청 거부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서류작성과 서류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A씨와 관련한 거주지 확인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사증이 거부당한 사안이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 다음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이용자 행동 수칙이라 할 수 있다.



- √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확인하여 챙겨 놓는다.  
(※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관련 교육필증 등)
- √ 사증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수속이 늦어진다면 직접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사태를 파악하고 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입국수속 지연 및 사증발급 거부 등의 사태에 따른 '신부입국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다

**카.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위 광고 등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도록 한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등을 보고 해당 여성을 만나게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막상 현지에 가서 해당 여성들을 만나지 못해 후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요구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분쟁 사례 6) 허위 및 거짓광고에 의한 분쟁 사례**

P씨는 H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H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해당 여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현지에 갔으나, 그것은 이른바 '미끼'영업의 수단이었으며, 해당 여성은 만나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른 여성과 맞선 본 후 마음에 들어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성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며, 000만원을 선금으로 주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지에서 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중도금 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와서 업체를 상대로 000만원을 환급하라고 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000만원 중 행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주겠다고 한다.

- 미끼 영업을 한 중개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어적 선택은 고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진'만을 보고 해당 여성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을 고치는 행위

가 남성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앞서도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서 중개업체가 순수한 마음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썼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 판단된다.

- 지금까지 결혼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업체와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가이드에 대해서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 김 홍 범(한남대학교)



## 연구 요약

이제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언어 교육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 한국어 교재 개발과 방송을 통한 한국어교육 그리고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방문 한국어교육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율은 초등학생이 14.4%에 그친 데 비해 중학생은 61.2% 고등학생은 44.2%로 청소년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형성된 역사를 고려하면 중고등학생의 증가율은 당분간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며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당면 과제이다. 앞으로 학습 능력 향상과 생활 지도 차원으로 분류하여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나오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다문화가정에서도 자녀의 교육 문제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부 교육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 과제와 기타 부처의 추진 과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 3월에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원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제까지 각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간헐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계성이나 규모 면에서 야심찬 정책이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천 의지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는 본 연구자가 그동안 강조해서 제안해 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교화 하여 실행하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지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어를 습득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발굴이다. 단순히 생활 한국어 습득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하고 자존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수 방법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창의성'교육이다. 따라서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각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창의성과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삼은 것은 '토론학습'이다. 토론학습을 위해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교수법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소개한 바 있다.

지원 체계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제안 것 중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 등과 같이 본 연구자가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순회) 다문화 전담교사 제도' 등과 같이 전망적으로 주장한 것도 있다. 모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다. 그 밖에 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족 학생 지도 안내서 개발, 지역별 대안학교 설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지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보완, '다문화가족 학생낙오방지법'(가칭) 제정 등을 고찰하였으며 '범국민 의식의 개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 시각이 전제되어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학습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
2.1.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 과제 .....	3
2.2. 다문화 관련 부처의 추진 과제 .....	5
2.3. 정책 추진의 문제점 .....	7
3. 학습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	8
3.1.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	8
3.2. 지원체계의 제도적 뒷받침 .....	22
4. 정책의 법제화를 통한 적극적 지원 .....	26
4.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완 .....	26
4.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보완 .....	27
4.3. 교육기본법의 엄격한 적용 .....	27
4.4. '다문화가족 학생낙오방지법'(가칭) 제정 .....	28
5. 정책 제언 .....	30
참 고 문 헌 .....	31
부록 1. 중학교 학습어휘 평정자료_국어 .....	34
부록 2. 고등학교 학습어휘 평점자료_국어 .....	40
부록 3. 중학생 학습어휘 평정자료_사회 .....	51
부록 4. 고등학교 학습어휘 평점자료_사회 .....	58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어를 습득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발굴이다. 단순히 생활 한국어 습득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하고 자존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언어 교육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 한국어 교재 개발과 방송을 통한 한국어교육 그리고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방문 한국어교육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율은 초등학생이 14.4%에 그친 데 비해 중학생은 61.2% 고등학생은 44.2%로 청소년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형성된 역사를 고려하면 중고등학생의 증가율은 당분간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며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당면 과제이다. 앞으로 학습 능력 향상과 생활 지도 차원으로 분류하여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나오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다문화가정에서도 자녀의 교육 문제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부 교육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부진성을 극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언어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한 잠재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다. 본 연구자는 우리의 교육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을 뒤쫓아 가기에 급급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 그들이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존감을 갖고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교수법으로써 '창의성 교육'을 제안하며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부진하다는 선입관을 제거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검증된 토론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수법의 중심에는 '창의성'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 연구자가 대학의 강의 시간에 활용하는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토론식 문법 교육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법 교육의 연구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 2. 학습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1.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 과제

#### 1)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1:1 멘토링 지원

- 1:1 멘토링 강화를 통한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

- (멘토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중학생만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나, '12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모두 멘토링 지원 확대
  -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단평가결과를 통해 교사가 멘토링 대상을 추천하고, 교육청 전담 코디네이터가 다문화학생 및 멘토를 연결 및 지원
- (맞춤형 멘토링) 대학생 뿐 아니라 이중언어 강사까지 멘토링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또래나 상급생 멘토링, 온라인 멘토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도시 : 대학생 중심 / 농촌 : 또래 및 상급생 멘토링, 온라인멘토링 중심
  - \* 온라인멘토링시스템 : ('12) IS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13) 시범운영(4개 지역)
- (교사와 멘토 간 정보 공유 강화) 담임교사와 멘토가 멘토링 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멘토링 학습자료 지원) 다문화학생이 특히 취약한 과목(국어·사회·과학 등)의 경우 멘티·멘토에게 학습 보조 자료 지원

○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 (거점형 - 초·중·고 120개교) 인근 학교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 지원
  - \* 다문화학생 지원 체제가 우수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인근 지역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한국어, 이중언어, 상호이해교육, 방학 중 캠프 운영 등 지원

- (집중 지원형 - 초 20개교) 도시·농촌형 우수학교 집중 지원
- (도시형)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교육, 상호이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해당 학교의 우수사례를 타 학교로 전파
- (농촌형)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 가족 인식 개선 등 다문화가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해당 학교의 우수사례를 타 학교로 전파
- (집중 지원형 - 중·고 10개교) 본격적인 다문화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
  - \* 중·고교 다문화학생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할 학교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해당 사례를 타 중·고교로 전파

○ 다문화가족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개설

○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2) 교사의 다문화 교육 전문성 제고

○ 국립 교·사대의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지원

- 교·사대 다문화강좌 운영 현황을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 전체 교·사대 중 30개교(전체 교·사대의 52.6%)에서 다문화강좌 운영을 지원

-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이해과정'을 포함하고, 다문화 이해 연수를 기초(일반교원 권장) → 심화연수(글로벌 선도학교 교원 필수)로 체계

○ 사립 교원양성대학의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유도

○ 현직 교장(감)·교사 연수지원 강화

## 3) 다문화 교육 기반 및 지원 체계 강화

○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재, 언어·인지 진단 도구, 교사매뉴얼 등의 연구 개발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역량 강화
- 지역 간의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방안

## 2.2. 다문화 관련 부처의 추진 과제

### 1)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 과제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 행복한 책읽기 사업 (독서진흥콘텐츠 개발)

### 2) 여성가족부의 추진 과제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교실 개설
-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동반 ·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 3) 법무부의 추진 과제

- 재한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
  - 국가·지역별 자조모임 구성(1200 여명), 상호 정보 교환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
-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실시
- 다문화가족법 교육 실시(생활법률 책자 보급)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 4) 경기도 교육청 ·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장 · 단기 계획

<표 1> 다문화교육정책의 주요영역별 장단기 계획

( ▪ 핵심과제, ○ 일반과제)

주요영역	단기과제	장기과제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여건 조성	▪ 다문화 교육 시범학교 확대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기록부 관리	▪ 다문화가정 학생 다언어 홈페이지 운영 ○ 다언어 팸말, 안내자료, 가정통신문
	시초 학습능력 신장	▪ 기초학습 부지학생 지원을 위한 엔토링 운영	▪ 한국어교육(KSL)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재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진로상담/교육 의무화 ▪ (특수)외국어 교실 운영	▪ 이중언어 활성화를 위한 (특수)외국어 경진대회
	생활적응 및 문화정체성 함양	○ 학교내 다문화가정 학생 전담 지도교사 지정	▪ 토요일업일 활용 한국문화 체험반 운영 ○ 국어·민족 정체성 형성 집단상담 연계 실시
일반학생	편견/차별 해소	▪ 다문화 체험 공모전 ○ 다문화가정 학생과 1:1 결연	○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고드래프 운영
	다문화 이해/체험	▪ 특별활동/재량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언어 교연/발표대회
교사	다문화 교육 능력 신장	▪ 교사 직무연수 확대 및 사이버 연수 시범운영	▪ 한국어교육(KSL) 양성과정 참여교사 지원
	교육연계제고	○ 다문화가정 자녀지도교사 인센티브 강화	▪ 다문화 교육연구 운영 활성화
외국인 학부모	자녀학습 지원	▪ 외국인 부모대상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 교육 ○ 학교생활 안내 리플릿 다언어 제작·배포	▪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 한국어 가정과 자애결연(Host Program)
	사회적 역량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시 외국어 강사 인력으로 활용	○ 학부모 정보화 교육 ○ 이주여성 학부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 2.3. 정책 추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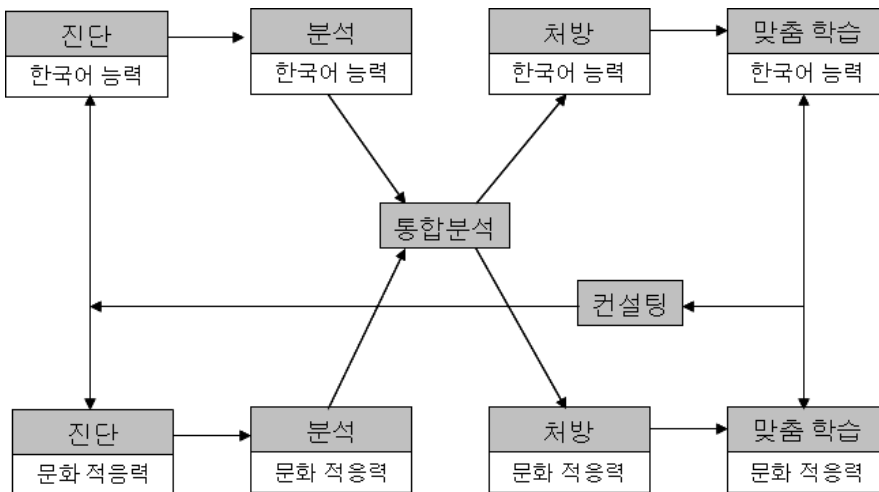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상호협력이나 조정 기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예산 낭비와 효율성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무총리실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앞으로는 다문화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이 기대된다.

### 3. 학습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 3.1.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 1) 진단·처방 학습 관리 시스템의 개발



[그림 1] 진단·처방 학습관리 시스템

다문화가족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한 교과교육 코치양성 및 배치

#####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창의성' 교육 강화

우리사회에서 기존의 지식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앞으로는 창의적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창의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뿐 창의성에 대한 이해나 접근방법은 교육 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창의성적 사고



를 위한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행한다.

창의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 사고력의 개념을 살펴본다. 고등 사고력의 구성 요소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메타 인지 탐구력, 의사 결정력 등으로 파악된다. 창의적 사고력은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민감성, 재구성), 정교성으로 구성된다(KEDI 사고 모형).

창의성이란 개인의 영역 관련 지식과 다양한 흥미의 바탕 위에 창의적 사고와 성격(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새롭고 가치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작품이나 제품 등)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며, 주변의 창의적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아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Guilford & Hoepfner(1971)의 개념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이해하고 문법 교육에 활용하였다.

Guilford & Hoepfner(1971)에 의하면 창의성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유창성

: 한 가지 주어진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이다(Guilford & Hoepfner, 1971).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독창적이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있으므로 유창성이 높아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낼수록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 ■ 융통성

: 문제해결을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 바꿀 수 있는 적응력을 말한다(Guilford & Hoepfner, 1971).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내용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강제로 결합해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 ■ 독창성

: 희귀하고 참신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이다.(Guilford & Hoepfner, 1971). 창의적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평소 가능한 한 특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

도는 가질 때 가능하다.

■ 정교성

: 세밀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따라 대안적인 방법을 생산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적절한 표상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Guilford & Hoepfner, 1971).

■ 문제 민감성

: 새로운 장치와 방법, 변화에 대한 필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Guilford & Hoepfner, 1971).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나 주변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이제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구체적인 문법 교육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sup>

**예시 1**

<핵심 개념>

- 부사절의 성립

<학습 목표>

- 일상적으로 쓰이는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위해 부사절의 성립 여부를 논증해 본다.

<학습 과제>

- 1) 다음의 학습 자료에서 제시한 예문에서 밑줄 친 단어가 부사인지 부사형인지 알아본다.
- 2) 국어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언으로 보기가 어렵지만 안건문장의 성분으로서 서술어로 기능할 경우의 예를 더 찾아본다.
- 3) 파생접미사와 굴절접미사(어미)의 차이를 알아본다.

---

1) 문법교육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한 토론 자료를 활용하였음.

- 4) 밑줄 친 단어의 어간에 결합된 형태소의 문법적 지위를 알아본다.
- 5) 두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확보하여 토론에서 설득 근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학습 자료>

1) 일상 언어 자료

- (1) 기암괴석이 날카로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 (2)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다.
- (3)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 (4) 승만이는 사기도 드높이 노래를 부르며 운동장을 돌았다
- (5) 승만이는 신경이 날카로이 보인다.

2) 국어사전에서의 탐색 자료

‘이’를 파생접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부사형 어미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 두 예문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그는 말없이 떠났다.
-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이’가 파생접사냐? 부사형 어미냐? 에 대한 문제점은 특히 ‘~없이’로 나타나는 말에 명확히 드러난다. ‘~없이’의 유형을 나누어 생각해보자. (이 때 파생부사의 기본형인 형용사와 함께 찾아보았다.)

① 형용사와 부사 모두 사전에 등재된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염치없이	[부사] 체면을 차릴 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이.
염치없다	[형용사] 체면을 차릴 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다.
경황없이	[부사] 몹시 괴롭거나 바쁘거나 하여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나 흥미가 전혀 없다.
경황없다	[형용사] 몹시 괴롭거나 바쁘거나 하여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나 흥미가 전혀 없다.

여지없이	[부사] 더 어찌할 나위가 없을 만큼 가차 없다. 또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다.
여지없다	[형용사] 더 어찌할 나위가 없을 만큼 가차 없다. 또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다.
아낌없이	[부사] 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아낌없다	[형용사] (주로 '아낌없는' 꼴로 쓰여) 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

② 형용사만 사전에 등재된 경우

연세한국어사전	
여지없이	없음
여지없다	[형용사] 더할 나위가 없거나 사정없다.
아낌없이	없음
아낌없다	[형용사] [흔히 '아낌없는 찬사/축복'의 꼴로 쓰이어] 아까워하거나 부족한 느낌이 없다.

③ 부사만 사전에 등재된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말없이	[부사] 1. 아무런 말도 아니하고. 2. 아무 사고나 말썽이 없이.
말없다	없음

④ 형용사와 부사 모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거짓없이	없음
거짓없다	없음
소리없이	없음
소리없다	없음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사전에 등재	엄치없이(O), 엄치없다(O) / 경황없이(O), 경황없다(O) / 여지없이(O), 여지없다(O) / 아낌없이(O), 아낌없다(O)
형용사만 사전에 등재	여지없이(X), 여지없다(O) / 아낌없이(X), 아낌없다(O)
부사만 사전에 등재	말없이(O), 말없다(X)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사전에 등재X	소리없이(X), 소리없다(X)

위 용례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형용사와 부사가 둘 다 사전에 등재된 유형은 형용사어간에 부사파생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생성된 것이다. 형용사만 사전에 등재된 유형은 부사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사만 사전에 등재된 유형과 둘 다 등재되지 않은 유형이다. 이 두 유형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3) 어문 규범과 관련된 자료(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b>날카로이</b>	<b>대수로이</b>	<b>번거로이</b>
많이	적어	헛되이	겉겉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만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섬섬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활동 과정>

- 1) 일상 언어 자료 (1)~(5)에 쓰인 밑줄 친 단어들은 용언의 어간에 파생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어를 형성한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사전을 통하여 확인해 본다.
- 2) 부사는 수의성분이므로 (1)과 (2)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3)과 (5)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3) (3)과 (4)에 쓰인 부사는 안긴 문장의 한 구성성분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앞의 주어 성분과 분명한 주술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우 밑줄 친 단어는 부사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용언의 부사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밑줄 친 단어의 어간에 결합한 형태소를 어미로 처리하고 있는지 국어사전에서 확인해 본다.
- 4) (3)과 (4)에 쓰인 형태소 '-이'를 어미 즉 부사형 어미로 처리할 경우 '-이'에 결합하는 어간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미의 특성과 비교해 본다.
- 5) 예문 (5)의 밑줄 친 단어가 부사인지 용언인지 판단해 보고 용언이라면 호응하는 주어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안은 문장의 요소가 안긴 문장에 중복되어 나타날 때 생략된다는 사실을 연상하여 '날카로이'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해 본다.

유창성	<p>한 가지 주어진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로 끝나는 부사들 중에 생략이 불가능한 예문들을 생각해보았다.</li> <li>• ‘-없이’로 끝나는 부사들을 생각해보고 그 기본형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li> </ul>
융통성	<p>문제해결을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바꿀 수 있는 적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사 생략이 불가능한 문장을 찾아내고 그 문장을 여러 방향으로 분석해 보았다.</li> <li>• ‘~없이’로 끝나는 부사들을 유형화하여 문제에 접근하였다.</li> </ul>
독창성	<p>회귀하고 참신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p> <p>‘-이’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파생접사로 봐야한다는 각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생각해보며 토론을 해볼 수 있다.</p>
정교성	<p>세밀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p> <p>‘-이’를 파생접사 뿐 아니라 부사형 전성어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예문을 분석해봄으로써 증명하였고,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생각해 보았다.</p>
문제의 민감성	<p>새로운 장치와 방법, 변화에 대한 필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p> <p>사전에 파생접사로만 등재되어 있는 ‘-이’를 파생접사로만 보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발견했다.</p>

## 예시 2

<핵심 개념>

- 품사 분류의 기준

<학습 목표>

- 국어의 품사를 국어 분석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 사전에서 명사로 처리하고 있는 단어지만 명사의 특성과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품사 소속 문제를 이해한다.

<학습 과제>

- 1) 품사 분류의 기준이 문법적 성질(형태와 기능)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 2) '원시', '간이', '순수' 등의 단어들이 국어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 3) 명사로 보기 어렵고 기능상 관형사의 특성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안다.
- 4) 관형사의 문법적 특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본다.
- 5) 명사로 볼 수 있는 근거와 관형사로 볼 수 있는 근거의 이론적 우월성을 비교해 본다.
- 6) 국어 문법의 앞선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품사 소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본다.

<학습 자료>

- 1) 국어사전에서 품사 확인하기

	사전 정의
원시	「명사」 「1」 시작하는 처음. 「2」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아니한 상태. ¶ 원시 신앙/원시 밀렵 지역/ 원시 시대
간이	「명사」 간단하고 편리함. 물건의 내용, 형식이나 시설 따위를 줄이거나 간편하게 하여 이용하기 쉽게 한 상태를 이른다. ¶ 간이 상수도/간이 화장실/간이 휴게소
순수	「명사」 「1」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 ¶ 순수 성분/순수 결정체/순수 농축액



2) 앞선 연구자의 품사 처리 들기 (주시경의 품사 분류)

품사	내 용	예
입	여러 가지 문(物)과 일을 이름 하는 기를 다 이름이라	사람, 개, 나무, 돌, 흙, 물, 뜻, 잠, 아침
엇	여러 가지 어떠함을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크, 단단하, 착하, 이르, 이러하
움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가, 날, 자, 먹, 잡, 먹이, 잡히
겻	입기의 만이나 움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가, 이, 를, 을, 도, 는, 예서, 로, 으 로
잇	한 말이 한 말에 잇어지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와, 과, 고, 면, 으면, 이면, 나, 으 나, 이나, 다가, 는데, 아, 어
언	엇더한(입기)이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이, 저, 그, 큰, 적은, 엇데 한, 무 슨, 이른, 착한, 귀한, 한, 두, 세
억	엇더하게(움)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다, 잘, 이리, 저리, 그리, 천천이, 꼭, 매우, 크게, 착하게
놀	놀라거나 늦기어 나는 소리를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아, 하, 참
끗	한 말을 다 맞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다, 이다, 나, 이나, 아 라, 어라, 도다, 오, 소

- 주시경은 형태보다는 기능을 중시하였다.

빨간 장미	
현재- 형용사의 관형사형	주시경- 관형사
아름답게	
현재- 형용사의 부사형	주시경- 부사

3) 동일한 단어를 각기 다른 품사로 볼 수 있는 예

<p>을: a. 오빠는 <u>을</u> 연말에 결혼할 예정이다.          b. <u>을</u>부터는 전매청에서 담배 농사를 주지 않아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다.</p> <p>단돈: 당장 <u>단돈</u> 100원이 아쉬운 판이다.</p> <p>아무런: 나는 그 일에 대해 <u>아무런</u> 관심도 없다.</p> <p>아무: a. <u>아무</u> 연필이라도 좋으니 빨리 가져오너라.          b. <u>아직</u> 아무도 안 왔다.</p> <p>다섯: a. 오늘은 <u>다섯</u>이나 지각을 했다.          b. 연필 <u>다섯</u> 자루만 사오너라.</p>
---

<학습 활동>

1) 명사는 먼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격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는 문법적 특성을 이해하고 '원시', '간이', '순수'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본다.

<p>명사로 보기 힘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 ( *원시가, *원시를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한국어사전 간이(簡易)[가 : 니] 【형성】 (정규 시설이 아니라) 어떤 시설의 기능이나 목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만을 간단하게 갖춘.</li> <li>• 격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 ( *간이가, *간이를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 ( *순수가, *순수를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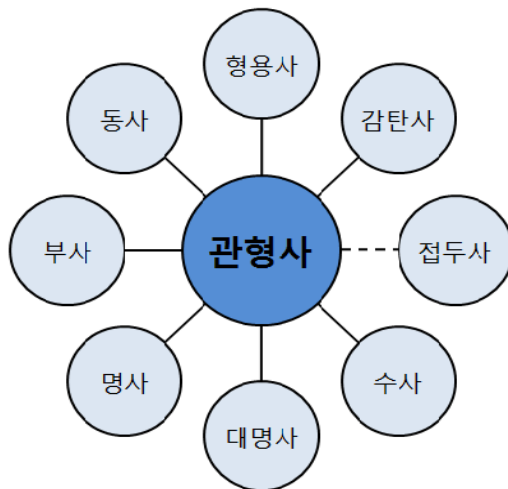
2) 관형사의 형태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본다. 형태적 특성으로 접미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기능적 특성으로 수식 받는 단어의 분포가 제한되는지 검토해 본다.

3) '원시', '간이', '순수'와 수식을 받는 단어 사이에 다른 말이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관형사로 보기 힘든 점
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명사와만 결합을 한다. (원시 예술 / *원시 얼굴)</li> <li>• 파생어가 된다. (원시적 농업) : (-적18(的) 「접사」)</li> <li>• 뒤의 체언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원시 구석기 시대)</li> </ul>
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명사와만 결합을 한다. (간이 식당 / *간이 컴퓨터)</li> <li>• 뒤의 체언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간이 대천 휴게소)</li> </ul>
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명사와만 자연스러운 결합을 한다.</li> <li>• 파생어가 된다. (순수한 물) :(-한15 (漢) 「접사」)</li> <li>• 뒤의 체언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순수 유산균 성분)</li> </ul>

4) 앞선 연구 중 주시경의 품사 체계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부사형을 각각 언씨(관형사), 억씨(부사)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엔간하다', '괜하다', '변변하다', '공연하다' 등의 단어는 기본형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지 못하고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따라서 '엔간한', '괜한', '변변한', '공연한'으로 쓰인 단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형사로 보는 입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5) 관형사를 기준으로 다양한 품사와의 경계에 있는 단어들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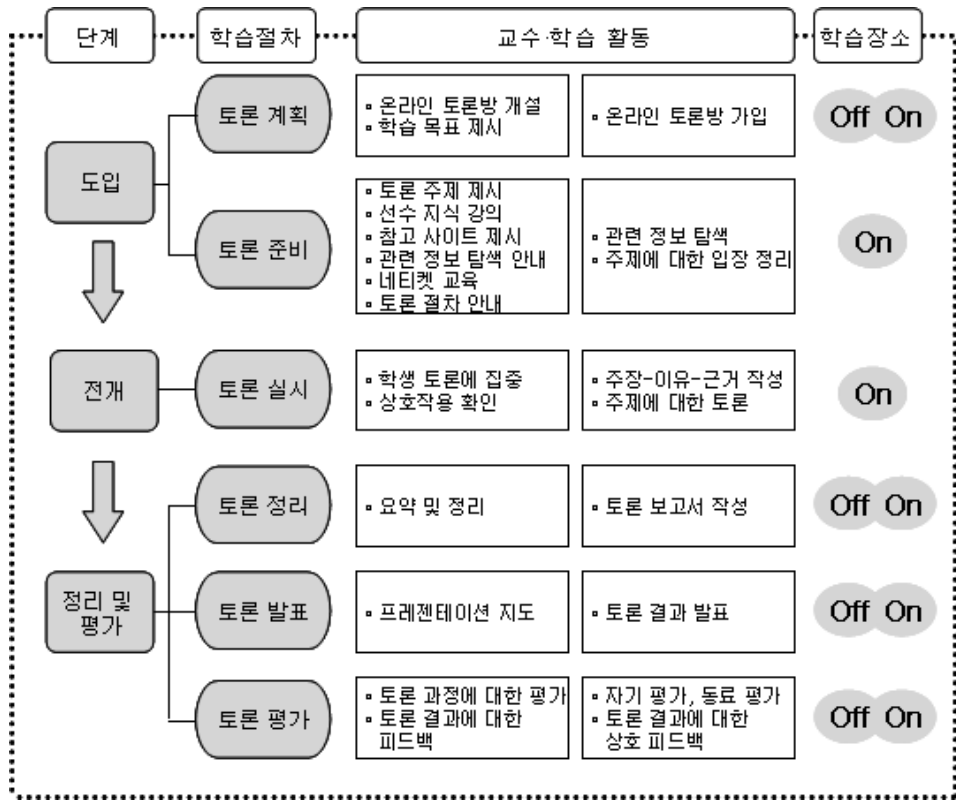


유창성	한 가지 주어진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
	정해진 품사가 아닌 또 다른 다양한 품사로 보았다.
융통성	문제해결을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바꿀 수 있는 적응력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독창성	희귀하고 참신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
	- 문제가 있는 품사를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품사가 온다는 1대1 대응의 고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품사통용이라는 1대多的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현대 품사분류가 아닌 과거의 품사분류 기준을 도입했다.
정교성	세밀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 문제를 제기하는 사고과정을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 ‘엔간히, 괜히, 변변히, 우연히, 공연히’에 과거 주시경의 품사 분류를 적용하는 사고과정을 통해서 품사를 교정해보았다.
문제의 민감성	새로운 장치와 방법, 변화에 대한 필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사전의 기술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함을 서술했다. - 언어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전의 기술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했다.

### 3) 토론학습 훈련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교수법의 적용

토론학습의 효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토론학습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한다.

즉 블렌디드러닝의 교수법을 적용한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블렌디드러닝 교수법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토론학습 모형

#### 4)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과별 학습사전 개발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세계화재단에서 편찬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습사전」이 있듯이,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유용한 교과별 학습사전을 개발해야 한다. 이 사전의 개발 방향과 기획 단계부터 다문화가족 학생 전담교사가 참여하여 교과 전문가와 공동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5) EBS와 KERIS(교육학술정보원)를 활용한 학습지원

현재 EBS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과학습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의 질문에 응답

해 줄 수 있는 교사지원단의 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교사지원단의 운영에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요구된다.

### 3.2. 지원체계의 제도적 뒷받침

#### 1)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표준 교재 개발 (중등, 고등)

본 연구자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표준교재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중학교용(1, 2권)과 고등학교용(1, 2권)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수학능력이 다소 부진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검토 및 개선]

- (현행 교과서 검토)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다문화친화적인 교과서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과서 검토 및 개선
  - \*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국가인권위원회)에 따라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를 준용하여 개선 추진
-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유치원(5세 누리과정)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문화교육 내용이 범교과 학습요소로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교과서와 지도서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 \* 보급계획: ('13) 유, 초1·2, 중 → ('14) 초3·4, 고 → ('15) 초5·6

#### 2) (순회) 다문화 전담교사 제도 도입

현재 시행 중인 상담 전담교사 제도와 같이 다문화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초기에는 순회교사 방식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학교 마다 다문화 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 3) 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족 학생 지도 안내서 개발

학생의 특성과 학업 수준에 따라 적용 지도 방법, 학습지도 방법, 상담 기법, 진로 지도 등이 달라진다. 학교생활 다문화 가족 학생이 한국의 문화 와 학교생활에 적응 하는 것이 어렵듯이 다문화가족 학생을 처음 대하는 교사도 낯설고 힘들어 한다

학생교육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교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안내서 개발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가족 학생지도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의 연수가 요구 된다.

### 4) 지역별 대안학교 설립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30%정도가 학교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한다. 초등학교는 80%이상 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는 60% 고등학교는 30%정도에 그친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학령기 학생 4만 6천여 명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만2천명뿐이므로 1만 명 이상이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 학생이 증가되면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다.

#### [다문화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 (다솜학교 확대) 다문화 고등학생의 조기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 학교인 다솜학교가 확대되도록 지원  
\* ('12) 서울 120명, 충북 135명 ⇒ ('13) 인천 1개교 추가 설립(210명)
-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솜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우 다문화학생이 선호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료·실습비 등을 지원  
\* ('12) 부산정보관광과(요리), 경기신흥대(미용·요리·자동차정비), 경남(미용·요리·간호) 등 3개 지역 운영 추진

## 5)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가자원화를 위해 이중 언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 한다. 이를 통해 자신감 형성과 정체성 확립의 성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서 시행 중인 이중 언어교사 양성제도를 전국의 교대로 확대하여 시·도교육청 별로 전문 이중 언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 [이중언어 강사 확대 및 양성 체계화]

- (양성계획 수립) 시·도 교육청별로 다문화학생의 국적 및 연령, 학생들의 언어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이중언어 강사 양성계획 수립
- (양성)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대학을 지역별로 단계적 확대  
\* ('11) 서울·경기·인천 → ('12) 서울·부산·경기·강원·경북·경남 지역으로 확대
- (배치) 교육청은 학교별 다문화학생의 국적 및 일반·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학기 시작 전에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  
\* 이중언어 강사 활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후 활용 가능

### [이중언어 강사의 질 제고]

- (심화연수 과정 신설)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에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이중언어 지도, 생활지도, 심리상담 등 추가적인 능력개발 기회 부여
- (강사요원의 질 제고) 「다문화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사업」을 통해 초청된 외국 교원을 이중언어 및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로 활용  
\* ('12년) 몽골 40명, 필리핀 20명 → ('13) 5개국, 160명 → ('14) 5개국, 180명

### [수준별 이중언어 교재 개발·보급 지원]

- (이중언어 교재 개발) 기초 외국어 프로그램부터 이중언어 유지·발전을 위한 중·고급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재 개발 :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소수 언어 우선 개발  
\* 교재 내용 :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이중언어 및 각 나라의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 및 문화이해”를 중심으로 교재 개발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 기회 제공]**

- (정규학교 : 방과후학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국적 및 일반·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수요를 고려하여 초급 외국어 교육 실시
  - \* 이중언어 강사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강사 활용 가능
- (거점학교 : 방학·주말지도) 정규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외국어를 중심으로 초·중·고급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운영
- (자기주도 학습)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이중언어 교재를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후 무료 서비스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캠프 개최]**

- 일반·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이중언어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학 중 이중언어 캠프 개최
  - \*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대학, 글로벌 브릿지 사업 대학을 중심으로 개최
- (자기주도 학습)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이중언어 교재를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후 무료 서비스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캠프 개최]**

- 일반·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이중언어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학 중 이중언어 캠프 개최
  - \*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대학, 글로벌 브릿지 사업 대학을 중심으로 개최

## 4. 정책의 법제화를 통한 적극적 지원

### 4.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완

-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 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을 살펴보면 “.....지원할 수 있다.”/“.....노력해야 한다.”가 많다.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해야 한다.”와 같이 지원 주체에 대한 책무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등의 기타 법령에서는 사용자의 책무규정에 “.....해야 한다.”가 대부분이며 “.....할 수 있다.”는 기술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 4.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보완

- 제11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규정에 대한 강제성이 약화되어 있다.

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귀화자, 영주권자, 전문외국인력 등과 동일한 층위에서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듯 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영속적인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4.3. 교육기본법의 엄격한 적용

- 제3조 (학습권)
-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
- 제12조 (학습자)
-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제18조 (특수교육)
-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영재교육)
- 제21조 (직업교육)
- 제00조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위의 교육기본법 제18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사회의 온정주의에 입각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 균등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제12조에 근거하면 국가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 4.4. '다문화가족 학생낙오방지법'(가칭) 제정

미국의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ren Left Behind)은 일반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연방교육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한 성취기준을 성취도 평가를 통해 만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제재를 받는 법이다.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다. 능력 있고 수준이 높은 교사에게 교육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중도 탈락자 없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법의 주요 목표 중에는 소수계층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2년 연속 성취도 미달인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전학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또 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과 외 비용을 지급한다.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을 원용 하여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령의 제정을 제안한다.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 즉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 제정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정부 부처 간의 혼선도 있을 수 있다. 또 정책의 수립 집행 단계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서 다문화가족을 평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기본법에 다문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법령 개정, 우수교사 및 교장의 채용 등과 같은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다. 또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부담이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설정에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5. 정책 제언

- 1) (순회) 다문화 전담교사 제도의 도입
- 2) (가칭) '학생낙오방지법'의 제정
- 3) '교육기본법'의 엄격한 적용과 보완 (제12조, 제18조)
- 4)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과별 '학습사전'의 개발
- 5)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교과별 , 수준별 '진단, 처방 시스템'의 개

## 참 고 문 헌

- 강태완, 김태용, 이상철, 허경호(2005),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현석(2006), 교과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카데미프레스.
- 김광수(1997), 논리와 비판적 사고, 서광사.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영채(1995), 사고와 문제 해결 심리학, 박영사.
- 김홍범(2004),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문법의 어말어미 체계 재 고찰, 한말연구.
- 김홍범(2008), 문법교육을 위한 탐구학습 자료 개발 연구, 겨레어문학 제 41집
- 김홍범(2009ㄱ),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법교육 연구”, 문법교육(10),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홍범(2009ㄴ), 상징어를 활용한 탐구학습, 국어교육연구 제 44집, 281-300쪽.
- 김홍범·이경현(2010ㄱ), “웹블렌디드 토론에 기반한 문법교수법의 원리와 방법”, 문법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홍범·이경현(2010ㄴ),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아카데미 문법토론 교수법” “문법교육(13), 한국문법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8),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2008),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 교육과정 해설.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박도순(2008), 교육연구방법론,
- 방금주(1993), “음악학습의 위계화”, 국악과교육(11), 한국국악교육학회, pp.3-8.
- 서상규 외(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신원프라임.
- 신명선(2004), 국어 사고 도구어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스티븐 바커(1986), 논리학의 기초, 최세만, 이체희 옮김. 서광사.
-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경현(2009ㄱ), “주제중심 토론극화수업의 모형 정립”, 청람어문교육(39),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경현(2009ㄴ), “CPS에 기반한 문법교육”, 문법교육(11),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상철, 백미숙, 정현숙(2007),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삼형 외(2000), 국어 교육학과 사고, 역락.
- 조연순 외(2008),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 한상철(2006), 토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인실(2011),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교육지원 사례 연구.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 강현화(2011),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성 모색.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 강현화(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문화부 용역 보고서
- 강현화 · 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고혜원 외(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여성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방안: 언어 · 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곽홍란(2010),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 및 현황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599-625, 한민족어문학회.
- 경상북도(2007), 2007 경상북도 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9), '09년 교과부 요청 다문화가정 연구학교 목록.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2008),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
- 권성호 · 서윤경(2005), 교육공학적 관점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올아카데미.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법무부 · 여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주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언어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출판사
- 박경래. (2008),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국립국어원 · 세명대 한국학센터.
- 박성혁 외(2008),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제.
-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 전홍주, 곽금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언어치료연구, 19, 53-72.
- 배은주(2006), 한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9(2), 25-55.
- 법무부(2010), 법무부 2010 보도자료.
- 송영복(2010), 초등 다문화 학습자 대상 이중언어 교육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43, 247-275.
- 신통철 외(1999), 교사를 위한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양인숙 외(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 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양태식(2010), 다문화 사회 소통 문제와 한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초등교육 제 21권 제1호, 49-66,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우인혜(2008), 다문화 사회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동향과 과제. 새국어교육 79, 281-309, 한국국어교육학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어원.

이순순(2009), 이주여성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 -대전지역 한국어교실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집. 247-276. *우리어문학회*.

이순연 (2011), 서울 지역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의 현황과 교육 주체의 요구 조사, *이중언어학*, 46.

이순형(2008), 다문화 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영주(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사례.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이영희(2010),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 11, 13-35, *세계한국어문학회*.

이재분 외(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이진주(2011), 귀국 조기 유학생의 학교 적응 언어 문제.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2004.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장인실 외(20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사업 평가 백서」.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

장인실 외(2011), 「제2기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평가 백서」.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

정일선 외 (2010),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2010), 경상북도 여성비전 프로젝트 III.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조수진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회*

조향록(2010),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문화사.

조향록(2011),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제도의 검토와 개선 방향.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성훈(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38호.

최용기(2010), *한국어정책론*. 한국문화사.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Charles M. Reigeluth(1999),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최육·박인우·변호승·양영선·왕경수·이상수·이인숙·임철일·정현미 역 (2005),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아카데미프레스.

Richard cullen(2008), Teaching grammar as a liberating force, *ELTJournal*(62-3), pp.221-230.

Widdowson, H.(1990), *Aspects of Language Teaching*,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1. 중학교 학습어휘 평정자료\_국어

No.	교과	주제	어휘	총점
1	국어	인물, 관심사	관심사	36
2	국어	인물, 관심사	대상	36
3	국어	조리있는 의견	발표	36
4	국어	조리있는 의견	사실과 의견	36
5	국어	조리있는 의견	설득	36
6	국어	조리있는 의견	요약	36
7	국어	인물, 관심사	인물	36
8	국어	조리있는 의견	정보 전달	36
9	국어	조리있는 의견	주장과 근거	36
10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메시지	35
11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목적	35
12	국어	인물, 관심사	물건	35
13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반응	35
14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상황	35
15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설득	35
16	국어	인물, 관심사	소개	35
17	국어	인물, 관심사	위인	35
18	국어	토의, 토론	의견	35
19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의사소통	35
20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정보전달	35
21	국어	토의, 토론	주장	35
22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뜻	34
23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분위기	34
24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정서표현	34
25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차이	34
26	국어	인물, 관심사	책	34
27	국어	인물, 관심사	취미	34
28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효과적	34
29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국어	33
30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길이	33
31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대조	33
32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대화	33
33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상대	33

34	국어	토의, 토론	찬반 의견	33
35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구별	32
36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상호 작용	32
37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존중	32
38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그림	31
39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내용	31
40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동영상	31
41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방식	31
42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사진	31
43	국어	토의, 토론	소통	31
44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언어	31
45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음악	31
46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이용	31
47	국어	토의, 토론	입장	31
48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자료	31
49	국어	토의, 토론	절차	31
50	국어	토의, 토론	청중	31
51	국어	목적과 상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친교	31
52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매체	30
53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모음	30
54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비판적	30
55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상대	30
56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설득	30
57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자음	30
58	국어	갈등과 해결	장애물	30
59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적절성	30
60	국어	갈등과 해결	진행	30
61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평가	30
62	국어	갈등과 해결	해결	30
63	국어	갈등과 해결	갈등	29
64	국어	화법과 소통	개인	29
65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결과	29
66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공감	29
67	국어	품사, 어휘의 유형	관계	29
68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관심사	29
69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광고	29
70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기간	29

71	국어	대상이 같은 글, 관점의 차이	내용	29
72	국어	조리있는 의견	논리정연	29
73	국어	단어, 문장, 담화	단어	29
74	국어	품사, 어휘의 유형	단어	29
75	국어	대상이 같은 글, 관점의 차이	대상	29
76	국어	갈등과 해결	등장인물	29
77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말	29
78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목적	29
79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변화	29
80	국어	화법과 소통	사회	29
81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시대	29
82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실험 과정	29
83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의사 표현	29
84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인터넷	29
85	국어	비유, 운율, 상징	작품	29
86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전통	29
87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정보	29
88	국어	화법과 소통	집단	29
89	국어	화법과 소통	차이	29
90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청자	29
91	국어	토의, 토론	토의	29
92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필요성	29
93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홍보	29
94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화자	29
95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가치관	28
96	국어	갈등과 해결	갈래	28
97	국어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	과학적	28
98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관객	28
99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관찰	28
100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그림	28
101	국어	품사, 어휘의 유형	기준	28
102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대상	28
103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등장인물	28
104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메모하기	28
105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문제	28
106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밑줄 긋기	28
107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방법	28

108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방송	28
109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사진	28
110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사회	28
111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삭제	28
112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상황	28
113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상황	28
114	국어	설명 방식, 논증 방식	설명 방식	28
115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소리	28
116	국어	표현 방식과 표현 효과	속담	28
117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시청자	28
118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언어	28
119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역사	28
120	국어	단어, 문장, 담화	연결	28
121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요약하기	28
122	국어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	우수성	28
123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음악	28
124	국어	읽기 과정과 원리	읽기 전	28
125	국어	읽기 과정과 원리	읽는 도중	28
126	국어	읽기 과정과 원리	읽은 후	28
127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자막	28
128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정신	28
129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조사	28
130	국어	화법과 소통	주장	28
131	국어	타당한 근거	주장	28
132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줄거리	28
133	국어	토의, 토론	토론	28
134	국어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	과학성	27
135	국어	설명 방식, 논증 방식	근거	27
136	국어	표현 방식과 표현 효과	내용	27
137	국어	표현 방식과 표현 효과	단위	27
138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독자	27
139	국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의 규칙성	말소리	27
140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명령적	27
141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명료	27
142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분량	27
143	국어	갈등과 해결	세계	27
144	국어	화자의 시점	세계	27

145	국어	화자의 시점	소설	27
146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소설	27
147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수필	27
148	국어	화자의 시점	시	27
149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시	27
150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악화	27
151	국어	매체 자료의 이용과 적절성	윤리	27
152	국어	읽기 목적과 내용 요약	읽기 목적	27
153	국어	반어, 역설, 풍자	작가	27
154	국어	화자의 시점	작가	27
155	국어	말 문화의 전통과 오늘	조상	27
156	국어	대상이 같은 글, 관점의 차이	차이	27
157	국어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	한글 창제	27
158	국어	반어, 역설, 풍자	강조	26
159	국어	갈등과 해결	개인	26
160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공익 광고	26
161	국어	갈등과 해결	과정	26
162	국어	토의, 토론	논제	26
163	국어	갈등과 해결	대결	26
164	국어	문학 작품의 평가와 표현	독자	26
165	국어	대상이 같은 글, 관점의 차이	동일	26
166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매체	26
167	국어	듣기·말하기의 소통과정	맥락	26
168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문학 작품	26
169	국어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	발음 기관	26
170	국어	갈등과 해결	사회	26
171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사회성	26
172	국어	타당한 근거	설득력	26
173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역사성	26
174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연구	26
175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요구 사항	26
176	국어	타당한 근거	의견의 차이	26
177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의사 결정	26
178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작가	26
179	국어	문학 작품 창작 배경과 의도	작품	26
180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전략	26
181	국어	읽기 과정과 원리	점검	26

182	국어	설명 방식, 논증 방식	주장	26
183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지시적	26
184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창조성	26
185	국어	반어, 역설, 풍자	태도	26
186	국어	품사, 어휘의 유형	특성	26
187	국어	대상이 같은 글, 관점의 차이	화제	26
188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간결	25
189	국어	화법과 소통	갈등	25
190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건의하는 글	25
191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규칙성	25
192	국어	대상이 같은 글, 관점의 차이	글감	25
193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기능	25
194	국어	토의, 토론	논거	25
195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도구	25
196	국어	상황, 맥락, 분위기	맥락	25
197	국어	단어, 문장, 담화	문장	25
198	국어	보고하는 글, 건의하는 글	문제 해결 방안	25
199	국어	문학 작품의 평가와 표현	문학 작품	25
200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상업적 광고	25
201	국어	타당한 근거	설득	25
202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	시각 이미지	25
203	국어	품사, 어휘의 유형	유형	25
204	국어	설득의 전략, 협상	전략	25
205	국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친교적	25
206	국어	타당한 근거	타당한 근거	25
207	국어	문학 작품의 평가와 표현	태도	25
208	국어	문학 작품의 평가와 표현	표현	25
209	국어	표현 방식과 표현 효과	형식	25

부록 2. 고등학교 학습어휘 평점자료\_국어

No.	과목	주제	어휘	총점
1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TV	24
2	문학	문학과 삶의 다양성	가치관	24
3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갈등	24
4	고전	고전의 지혜와 삶의 성찰	갈등	24
5	국어 I	<화법>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갈등	24
6	국어 II	<문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갈등	24
7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감동	24
8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개성	24
9	국어 I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경험	24
10	고전	국어에 관한 고전과 국어 문학	공동체	24
11	국어 I	<화법>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공동체	24
12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과장	24
13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관심	24
14	국어 II	<화법> 매체 자료의 활용	기능	24
15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기술	24
16	국어 I	<화법>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대화	24
17	국어 II	<독서> 독서 문화의 이해	독서	24
18	국어 I	<작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독자	24
19	국어 I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독자	24
20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독자	24
21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라디오	24
22	국어 I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매체	24
23	문학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매체	24
24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면접	24
25	국어 I	<작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목적	24
26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문자 메시지	24
27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뮤지컬	24
28	국어 I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민족	24



29	국어Ⅱ	<화법> 매체 자료의 활용	방송 매체	24
30	국어Ⅱ	<작문>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배려	24
31	국어Ⅱ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비난	24
32	국어Ⅰ	<문학> 문학과 사회적 소통	삶	24
33	국어Ⅰ	<독서> 독서의 상황과 독서의 방법	상황	24
34	국어Ⅰ	<화법> 대화 원리의 이해	상황	24
35	국어Ⅰ	<독서>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생활화	24
36	국어Ⅰ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수정	24
37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수집	24
38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신문	24
39	국어Ⅱ	<작문>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신중하다	24
40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애니메이션	24
41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연극	24
42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영향	24
43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영화	24
44	국어Ⅰ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육설	24
45	국어Ⅰ	<화법>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인간관계	24
46	고전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인격	24
47	고전	고전에 바탕을 둔 국어 활동	인류	24
48	국어Ⅱ	<화법> 매체 자료의 활용	인쇄 매체	24
49	국어Ⅰ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인중	24
50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인터넷	24
51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인터넷	24
52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인터넷 메신저	24
53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일관성	24
54	국어Ⅰ	<독서>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자율	24
55	국어Ⅰ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작문(글쓰기)	24
56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전문성	24
57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전쟁	24
58	국어Ⅰ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정보	24
59	국어Ⅱ	<작문>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존중	24

60	국어Ⅱ	<독서> 독서와 문제 해결	주장	24
61	국어 I	<작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주제	24
62	국어 I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지식	24
63	국어 I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지식	24
64	국어 I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지역	24
65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질문	24
66	국어 I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차별	24
67	국어Ⅱ	<작문>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책임감	24
68	국어 I	<문학> 문학과 사회적 소통	타인	24
69	국어 I	<독서>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태도	24
70	국어Ⅱ	<화법> 매체 자료의 활용	통신 매체	24
71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트위터	24
72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평화	24
73	국어 I	<문법> 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	표준어	24
74	국어 I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표현	24
75	국어 I	<문법> 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	한글 맞춤법	24
76	국어Ⅱ	<문법> 한글의 가치와 국어 사랑	한글날	24
77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휴대 전화	24
78	문학	문학과 인접 분야	휴대전화	24
79	국어 I	<독서>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흥미	24
80	고전	고전을 통한 세계 이해	가치	23
81	국어 I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가치관	23
82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가치관	23
83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감상문	23
84	국어Ⅱ	<문학>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	계승	23
85	국어 I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공동체	23
86	국어 I	<문법> 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	교양	23
87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깨달음	23
88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논리적	23
89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능동적	23
90	국어 I	<화법> 대화 원리의 이해	대상	23

91	국어Ⅱ	<화법> 매체 자료의 활용	매체 자료	23
92	국어Ⅱ	<문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모순	23
93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반박	23
94	국어 I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비속어	23
95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세계관	23
96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소통	23
97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수필	23
98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시대 상황	23
99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신간 소개	23
100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언어적	23
101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예술	23
102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왜곡	23
103	국어Ⅱ	<화법> 매체 자료의 활용	유형	23
104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의도	23
105	국어 I	<화법> 대화 원리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	23
106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인생관	23
107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	점검	23
108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정확성	23
109	국어 I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조직	23
110	국어 I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조직	23
111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청자	23
112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축소	23
113	국어Ⅱ	<문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한계	23
114	국어Ⅱ	<문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가치	22
115	국어 I	<독서>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가치관	22
116	국어 I	<문학> 작가의 개성 이해와 작품 감상	가치관	22
117	문학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가치관	22
118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	개선	22
119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객관성	22
120	고전	고전의 본질과 가치	고전 문학	22
121	고전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과학	22

122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관습	22
123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관심사	22
124	고전	고전의 재해석	교훈	22
125	고전	고전을 통한 세계 이해	논리적	22
126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논설문	22
127	국어 I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능동적	22
128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도표	22
129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모호한 표현	22
130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문명	22
131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문학	22
132	고전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문학	22
133	고전	국어에 관한 고전과 국어 문학	문화	22
134	문학	문학과 삶의 다양성	바람직하다	22
135	국어 II	<화법> 발표와 토론의 이해	발표	22
136	문학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비판	22
137	고전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사회	22
138	독서와 문법	독서와 국어 생활	서가(書架)	22
139	국어 II	<작문> 정보의 조직과 논거의 이해	설득하는 글	22
140	국어 I	<문학> 문학과 사회적 소통	소통	22
141	국어 I	<문학> 문학과 사회적 소통	시대 반영	22
142	국어 II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신뢰성	22
143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신뢰성	22
144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어휘	22
145	문학	문학과 삶의 다양성	예리하다	22
146	고전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예술	22
147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외국어	22
148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외래어	22
149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욕구	22
150	독서와 문법	글의 구성 원리	원인과 결과	22
151	독서와 문법	음운	음성	22
152	고전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인간의 본성	22

153	고전	고전을 통한 세계 이해	인식	22
154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자기소개서	22
155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잡지의 서평	22
156	국어Ⅱ	<문법> 한글의 가치와 국어 사랑	전승되다	22
157	문학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주제 의식	22
158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지역 방언	22
159	고전	고전의 재해석	지혜	22
160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자아 의식	진솔하다	22
161	국어 I	<화법> 대화 원리의 이해	청자(듣는 이)	22
162	고전	고전의 지혜와 삶의 성찰	탐구	22
163	국어Ⅱ	<화법> 발표와 토론의 이해	토론	22
164	고전	고전을 통한 소통과 이해의 확장	평가	22
165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한자어	22
166	국어Ⅱ	<화법> 발표와 토론의 이해	현대 민주 사회	22
167	국어 I	<화법> 대화 원리의 이해	화자(말하는 이)	22
168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효용성	22
169	국어Ⅱ	<문법> 국어의 변천과 발전 방향	훈민정음	22
170	문학	문학과 자아	감상	21
171	고전	고전의 재해석	계승	21
172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고유어	21
173	국어 I	<작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고쳐쓰기	21
174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공신력	21
175	국어Ⅱ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공정성	21
176	국어 I	<작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관습	21
177	국어 I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관습	21
178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논거	21
179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담화	21
180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독서 기록장	21
181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독서자료철(포트폴리오)	21
182	국어 I	<문법> 음운과 어휘의 이해	모음	21
183	독서와 문법	글의 구성 원리	문제·해결	21

184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문화	21
185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반향	21
186	국어Ⅱ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비판	21
187	고전	고전을 통한 세계 이해	비판적	21
188	국어Ⅰ	<문법>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사회 방언	21
189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상투적인 표현	21
190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자아 의식	상호작용	21
191	고전	고전의 지혜와 삶의 성찰	성찰	21
192	국어Ⅱ	<문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세계관	21
193	국어Ⅱ	<작문>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습관화	21
194	국어Ⅰ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신념	21
195	문학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연관성	21
196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연설문	21
197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예측하기	21
198	고전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인문	21
199	독서와 문법	글의 구성 원리	일관성	21
200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자아	21
201	국어Ⅰ	<문법> 음운과 어휘의 이해	자음	21
202	고전	고전의 재해석	적용	21
203	국어Ⅰ	<화법>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타협	21
204	국어Ⅱ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평가 기준	21
205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평판	21
206	문학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한국 문학	21
207	고전	고전의 본질과 가치	현대 문학	21
208	국어Ⅱ	<문학> 문학의 효용과 문학 활동	(감정을)정확하다	20
209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간명성	20
210	독서와 문법	글의 구성 원리	강조성	20
211	국어Ⅰ	<화법>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공감적 듣기	20
212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논리성	20
213	문학	문학과 매체	다매체 시대	20
214	국어Ⅱ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담화	20

215	국어Ⅱ	<문법> 문장과 담화의 이해	담화 표현	20
216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대화 방식	20
217	독서와 문법	독서의 방법	독해	20
218	국어Ⅱ	<작문> 작문 맥락의 이해	맥락	20
219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명확성	20
220	독서와 문법	음운	모음	20
221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문명	20
222	국어Ⅱ	<문법> 문장과 담화의 이해	문장 유형	20
223	독서와 문법	글의 구성 원리	비교·대조	20
224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비언어적 표현 전략	20
225	국어Ⅰ	<독서> 독서의 상황과 독서의 방법	속독	20
226	화법과 작문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수용	20
227	국어Ⅱ	<독서> 매체 자료의 분석과 비판적 태도	신뢰성	20
228	독서와 문법	음운	음운	20
229	국어Ⅰ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일관성	20
230	독서와 문법	음운	자음	20
231	문학	문학과 자아	작품의 이해	20
232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장황한 표현	20
233	국어Ⅱ	<화법> 발표와 토론의 이해	쟁점	20
234	국어Ⅱ	<독서> 독서 문화의 이해	지적 수준	20
235	국어Ⅰ	<작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초고	20
236	국어Ⅰ	<문학> 작가의 개성 이해와 작품 감상	취향	20
237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타당성	20
238	문학	문학과 공동체	타인과 소통	20
239	독서와 문법	독서의 방법	핵심어	20
240	국어Ⅰ	<독서> 독서의 상황과 독서의 방법	훑어보기	20
241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기능	개인적 차원	19
242	국어Ⅰ	<화법>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결속	19
243	국어Ⅱ	<문법> 국어의 변천과 발전 방향	고대	19
244	문학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관습적	19
245	국어Ⅱ	<문법> 문장과 담화의 이해	관용 표현	19

246	국어Ⅱ	<독서> 독서와 문제 해결	글의 전개	19
247	국어Ⅱ	<작문> 정보의 조직과 논거의 이해	논리적 근거	19
248	국어Ⅱ	<화법> 발표와 토론의 이해	논증	19
249	문학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	19
250	독서와 문법	독서와 국어 생활	사회문화적 맥락	19
251	화법과 작문	설득의 표현 전략	사회적 책임	19
252	독서와 문법	담화	상황 맥락	19
253	국어 I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생성	19
254	고전	고전의 재해석	선인	19
255	문학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수용	19
256	독서와 문법	언어의 본질	역사성	19
257	국어Ⅱ	<문법> 국어의 변천과 발전 방향	중세	19
258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중심 내용 파악하기	19
259	독서와 문법	담화	지시 표현	19
260	고전	고전의 본질과 가치	지적	19
261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질문 만들기	19
262	독서와 문법	언어의 본질	창조성	19
263	국어Ⅱ	<화법> 비판적 듣기와 평가	타당성	19
264	국어Ⅱ	<작문> 정보의 조직과 논거의 이해	타당한 근거	19
265	국어 I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통일성	19
266	독서와 문법	글의 구성 원리	통일성	19
267	고전	국어에 관한 고전과 국어 문학	통찰	19
268	문학	문학과 삶의 다양성	통찰력	19
269	문학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특수성	19
270	문학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한(限)	19
271	독서와 문법	국어 자료의 탐구	한글 표기	19
272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함축적 표현	19
273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화자의 성품	19
274	독서와 문법	언어의 본질	규칙성	18
275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극	18



276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논증	18
277	독서와 문법	담화	대응 표현	18
278	독서와 문법	독서와 국어 생활	독서 문화	18
279	문학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맥락	18
280	국어 I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문자 기호	18
281	국어 II	<독서> 매체 자료의 분석과 비판적 태도	분석	18
282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비판적 안목	18
283	고전	국어에 관한 고전과 국어 문학	사고	18
284	독서와 문법	독서의 가치와 성찰	사회 공동체	18
285	국어 II	<독서> 매체 자료의 분석과 비판적 태도	상업성	18
286	국어 II	<작문> 작문 맥락의 이해	선별 능력	18
287	독서와 문법	음운	소리의 길이(장단)	18
288	독서와 문법	음운	소리의 높낮이(고저)	18
289	국어 I	<독서>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소양	18
290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	소통 행위	18
291	독서와 문법	언어의 본질	언어의 사회성	18
292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의도 추론하기	18
293	독서와 문법	음운	의성어	18
294	독서와 문법	음운	의태어	18
295	화법과 작문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입증	18
296	국어 I	<작문> 작문 특성의 이해	전략	18
297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전형적	18
298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정보의 속성	18
299	국어 II	<화법> 발표와 토론의 이해	정책 논제	18
300	국어 II	<작문> 작문 맥락의 이해	조직 능력	18
301	문학	문학과 사고	창의적인 사고	18
302	독서와 문법	독서의 본질	타당성비판하기	18
303	국어 I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해독(解讀)	18
304	문학	문학과 공동체	공동체문화	17
305	국어 I	<문학> 문학 갈래의 이해	극	17
306	독서와 문법	언어의 본질	기호성	17

307	화법과 작문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논리적 오류	17
308	독서와 문법	단어	다의어	17
309	국어Ⅱ	<독서> 독서 문화의 이해	독서 문화	17
310	국어Ⅰ	<독서> 독서 특성의 이해	독해(讀解)	17
311	독서와 문법	단어	동음이의어	17
312	국어Ⅱ	<문법> 문장과 담화의 이해	문장 표현	17
313	독서와 문법	문장	부정 표현	17
314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과 자아 의식	비판적 안목	17
315	고전	고전을 통한 소통과 이해의 확장	비평	17
316	국어Ⅱ	<문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비평	17
317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	17
318	독서와 문법	독서와 국어 생활	상황 맥락	17
319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서사	17
320	문학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서정	17
321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	성찰적 사고	17
322	국어Ⅰ	<문법> 음운과 어휘의 이해	소리의 길이(장단)	17
323	국어Ⅰ	<문법> 음운과 어휘의 이해	소리의 높낮이(고저)	17
324	국어Ⅰ	<작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응집성	17
325	독서와 문법	언어의 본질	자의성	17
326	독서와 문법	담화	접속 표현	17
327	국어Ⅱ	<독서> 매체 자료의 분석과 비판적 태도	타당성	17
328	문학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표현 형식	17
329	화법과 작문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회고문	17

부록 3. 중학생 학습어휘 평정자료\_사회

No.	교과	주제	어휘	총점
1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감소하다	36
2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개인적	36
3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공통점	36
4	사회	근대 이후의 세계사	노력	36
5	사회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다양하다	36
6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문화적 특징	36
7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물	36
8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발전	36
9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발전	36
10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백두산	36
11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변화	36
12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변화시키다	36
13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불리하다	36
14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불편하다	36
15	사회	일상생활과 법	비교	36
16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생활	36
17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석유	36
18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설명하다	36
19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언어	36
20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연결 짓다	36
21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영향을 미치다	36
22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영향을 미치다	36
23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영향을 미치다	36
24	사회	일상생활과 법	의미	36
25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인간	36
26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존중하다	36
27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종교	36
28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주민 생활	36
29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증가하다	36
30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증가하다	36
31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지역	36
32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지역세계	36
33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차이점	36

34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참여하다	36
35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태도	36
36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통일	36
37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풍부	36
38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피해	36
39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필요성	36
40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관광지	35
41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농업	35
42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다양성	35
43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대통령	35
44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문화	35
45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변화	35
46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불리하다	35
47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유리하다	35
48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인구	35
49	사회	일상생활과 법	일상생활	35
50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지진	35
51	사회	우리나라의 영토	환경	35
52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환경 문제	35
53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가능	34
54	사회	개인과 사회생활	개인	34
55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공정하다	34
56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관광자원	34
57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국가적	34
58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국제적	34
59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농작물	34
60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바람직하다	34
61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발생하다	34
62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발전	34
63	사회	일상생활과 법	법	34
64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사회 개혁	34
65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시대	34
66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자연환경	34
67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자연환경	34
68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전통 마을	34
69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지역적	34
70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태풍	34

71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특징	34
72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협력	34
73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형성	34
74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확대	34
75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경쟁	33
76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남북분단	33
77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등장	33
78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33
79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분단 극복 방안	33
80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사회	33
81	사회	개인과 사회생활	사회생활	33
82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	33
83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일본	33
84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전달	33
85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정치·문화적 변화	33
86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창조	33
87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경쟁	32
88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북한	32
89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불평등	32
90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쇠토	32
91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아이디어	32
92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32
93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참여방법	32
94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통일	32
95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국가 기관	31
96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대외 교류	31
97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문화	31
98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변동	31
99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상호 작용	31
100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헌법	31
101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6·25전쟁	30
102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다문화적 변화	30
103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대중매체	30
104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대중문화	30
105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대책	30
106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도시 문제	30
107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동아시아	30

108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문제점	30
109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문제점	30
110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미디어	30
111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방향	30
112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변모	30
113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이유	30
114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인구 문제	30
115	사회	인권 보장과 법	인권 보장	30
116	사회	인권 보장과 법	인권 침해	30
117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일상	30
118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30
119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종류	30
120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지역	30
121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토지 이용	30
122	사회	일상생활과 법	특성	30
123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특징	30
124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특징	30
125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평화 통일 노력	30
126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홍수	30
127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환경	30
128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공업	29
129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국토	29
130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분단	29
131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성립	29
132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세계화	29
133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역사 갈등 해결	29
134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이용	29
135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자연재해	29
136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전통사회	29
137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제품	29
138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지형	29
139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한국 사회 변동	29
140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형성	29
141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갈등	28
142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개발 현황	28
143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건조	28
144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경제 활동	28

145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고조선	28
146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문화적 변화	28
147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사례	28
148	사회	일상생활과 법	사례	28
149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삼국	28
150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생산	28
151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성립	28
152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실상	28
153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에너지 자원	28
154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원인	28
155	사회	우리나라의 영토	원인	28
156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유입	28
157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의의	28
158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이익	28
159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이해	28
160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임업	28
161	사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자원	28
162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중요성	28
163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지역	28
164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크리스트교	28
165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	태도	28
166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현상	28
167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현지	28
168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경제	27
169	사회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국가	27
170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국회	27
171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7
172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문명	26
173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서남아시아	27
174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세계화	27
175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적합하다	27
176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전략	27
177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지역차	27
178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해결 방안	27
179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현대 사회	27
180	사회	경제생활과 시장경제의 이해	경제 활동	26
181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경향	26

182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고구려	26
183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공존	26
184	사회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국제 사회	26
185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농업 생산	26
186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도시 발달	26
187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동아시아	26
188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무신정권	26
189	사회	근대 이후의 세계사	배경	26
190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삼국 분열	26
191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상호 의존	26
192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생활양식	26
193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세계 평화	26
194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이슈	26
195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인도	26
196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조정	26
197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지역 변화	26
198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통일	26
199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해일	26
200	사회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황사	26
201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가야	25
202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거주	25
203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거주지	25
204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경제 협력	25
205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경제성장	25
206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고대국가	25
207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고려	25
208	사회	국제경제와 세계화	국제 거래	25
209	사회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국제 정치	25
210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노동문제	25
211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백제	25
212	사회	인권 보장과 법	법원	25
213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분쟁	25
214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사례 인구 이동	25
215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사막화	25
216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사법부	25
217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사회 문제	25
218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시민 참여	25



219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시민 참여 활동	25
220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신라	25
221	사회	일상생활과 법	심급제도	25
222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열대우림	25
223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이념	25
224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인구문제	25
225	사회	근대 이후의 세계사	일본	25
226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입법부	25
227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조선	25
228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지리적 요인	25
229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지역차	25
230	사회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지역화	25
231	사회	근대 이전의 한국사	통일 신라	25
232	사회	헌법과 국가 기관	행정부	25
233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환경문제	25
234	사회	근대 이후의 한국사	광복	24
235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국제 협력	24
236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국제이주	24
237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극한 지역	24
238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	24
239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기업화	24
240	사회	근대 이후의 세계사	냉전	24
241	사회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24
242	사회	자연 재해와 인간 생활	발생하다	24
243	사회	근대 이전의 세계사	발전	24
244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사회적 환경	24
245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생산 구조	24
246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소비 특성	24
247	사회	거주에 유리한 지역	인구 밀집 지역	24
248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인구 분포	24
249	사회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자연경관	24
250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저출산	24
251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저출산	24
252	사회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	중심부	24
253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지역 사회 문제	24
254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평화 통일	24

부록 4. 고등학교 학습어휘 평점자료\_사회

No.	과목	주제	어휘	총점
1	사회	삶의 질과 복지	객관적 기준	24
2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경제 성장	24
3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고려	24
4	세계사	서양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	과학혁명	24
5	경제	국민 경제의 이해	국내 총생산	24
6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금융 시장	24
7	한국 지리	기후 환경의 변화	기후 요인	24
8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냉전	24
9	사회	다양성과 관용	다문화 사회	24
10	사회 문화	문화와 사회	대중 문화	24
11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도교	24
12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도시 내부 구조	24
13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도시체계	24
14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독립 협회	24
15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동학 농민 운동	24
16	사회	다양성과 관용	문화 상대주의 관점	24
17	세계사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	민족 운동	24
18	한국 지리	다양한 우리 국토	북한 지역	24
19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비용	24
20	동아시아사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사대부	24
21	사회	세상 이해	사실	24
22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사회 과학 연구 절차	24
23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 집단	24
24	사회	개인과 공동체	사회적 갈등	24
25	세계 지리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생태학적 관점	24
26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섬유	24
27	세계사	역사와 인간	세계사	24
28	세계사	현대 세계의 변화	세계화	24

29	세계사	서양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	시민혁명	24
30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신라	24
31	사회	금융 환경과 합리적인 소비	신용관리	24
32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신재생 에너지	24
33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역할	24
34	한국 지리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영토	24
35	세계사	지역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량	오스만 제국	24
36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원자력	24
37	세계 지리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유기적인 관계	24
38	세계사	문명의 성립과 통일제국	유라시아	24
39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의류	24
40	사회	개인 이해	인간 존중	24
41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일탈 행동	24
42	세계사	서양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	자본주의	24
43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자유민주주의	24
44	경제	국민 경제의 이해	재정 정책	24
45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재편되다	24
46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저축	24
47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정주체계	24
48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정주체계	24
49	세계사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	제국주의 식민지배	24
50	사회	일과 여가	진로	24
51	사회	다양성과 관용	차별	24
52	경제	국민 경제의 이해	총공급	24
53	경제	국민 경제의 이해	통화 정책	24
54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특화	24
55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원리	행정부 수반	24
56	사회	삶의 질과 복지	헌법	24
57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기본권	24
58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희소성	24
59	동아시아사	오늘날의 동아시아	갈등	23

60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공급	23
61	세계 지리	세계화와 지역 이해	국토 통일	23
62	동아시아사	오늘날의 동아시아	냉전	23
63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노동	23
64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노동 시장	23
65	동아시아사	국가의 형성	농경	23
66	사회	세계화와 상호 의존	다국적 기업	23
67	세계사	지역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량	무굴제국	23
68	경제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무역	23
69	세계 지리	갈등과 공존의 세계	문화적 차이와 교류	23
70	동아시아사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민족 운동	23
71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부채	23
72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분업	23
73	사회 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빈곤 문제	23
74	세계 지리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산지 지형	23
75	동아시아사	국가의 형성	생업	23
76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생활 양식	23
77	동아시아사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서민 문화	23
78	법과 정치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선거제도	23
79	사회	개인 이해	선천적 요인	23
80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소득 재분배	23
81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수요	23
82	사회	개인 이해	시민 사회	23
83	사회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식량 총 생산량	23
84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연구 윤리	23
85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유교	23
86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이민족	23
87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인구 문제	23
88	세계사	역사와 인간	인류	23
89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잉여	23
90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자료 수집 방법	23

91	세계사	현대 세계의 변화	자본주의	23
92	한국 지리	기후 환경의 변화	자연 재해	23
93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자원 배분	23
94	세계 지리	갈등과 공존의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23
95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재무	23
96	한국사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제1차 세계대전	23
97	사회	개인과 공동체	주권자	23
98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지위	23
99	사회	일과 여가	직업	23
100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질적 연구	23
101	동아시아사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침략	23
102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탄력성	23
103	사회	세상 이해	통계자료	23
104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풍속	23
105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혼인	23
106	한국 지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전	23
107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효용성	23
108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가야	22
109	한국사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건국	22
110	한국 지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고령화	22
111	사회	고령화와 생애 설계	고령화 사회	22
112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공업 활동	22
113	사회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과잉 인구화	22
114	사회	세계화와 상호 의존	국제 교역	22
115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단체	22
116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사법재판소	22
117	사회	일과 여가	기업가 정신	22
118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대도시	22
119	법과 정치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	22
120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발해	22
121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불교	22

122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불교	22
123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봉당정치	22
124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사상적 특징	22
125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사적	22
126	사회	삶의 질과 복지	사회봉사	22
127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사회·문화 현상	22
128	사회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산업화	22
129	한국 지리	지형 환경과 생태계	산지 지형	22
130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상징적 상호 작용론,	22
131	한국 지리	지형 환경과 생태계	생태학적 관점	22
132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수립	22
133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수요자	22
134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시장 균형	22
135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신분 제도	22
136	사회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영토문제	22
137	사회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원격탐사	22
138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위상	22
139	한국 지리	지형 환경과 생태계	유기적인 관계	22
140	동아시아사	국가의 형성	유목	22
141	사회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인구 분포의 불균등	22
142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인권	22
143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정보화	22
144	법과 정치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정치참여	22
145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22
146	사회 문화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종교 제도	22
147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책봉	22
148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통치 체제	22
149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투자	22
150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풍수지리설	22
151	한국 지리	지형 환경과 생태계	해안 지형	22
152	경제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환율	22

153	사회	세계화와 상호 의존	개발도상국	21
154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고구려	21
155	사회	개인 이해	공동체	21
156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관료제	21
157	동아시아사	국가의 형성	국가의 성립	21
158	세계 지리	갈등과 공존의 세계	국제 분쟁	21
159	한국사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국제 정세	21
160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연합	21
161	한국 지리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국토 인식 사상	21
162	사회	금융 환경과 합리적인 소비	금융자산	21
163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기호작물	21
164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농업	21
165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도시 내부 구조	21
166	사회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도시화	21
167	사회 문화	문화와 사회	문화 상대주의	21
168	한국 지리	다양한 우리 국토	북한	21
169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사대교린 정책	21
170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 실재론	21
171	사회	개인과 공동체	삶	21
172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상공업	21
173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생활 양식	21
174	사회	개인과 공동체	선거	21
175	동아시아사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성리학	21
176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세계화	21
177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세도정치	21
178	경제	국민 경제의 이해	실업	21
179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에너지	21
180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역사관	21
181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왜란	21
182	한국 지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외국인 노동력	21
183	동아시아사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유목 민족	21

184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의병 운동	21
185	한국 지리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인식	21
186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자동차	21
187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전통촌락	21
188	법과 정치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정당제도	21
189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제조업	21
190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조공	21
191	사회	삶의 질과 복지	주관적 기준	21
192	사회 문화	문화와 사회	주류문화	21
193	사회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주변국	21
194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철강	21
195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친족 제도	21
196	사회 문화	문화와 사회	하위 문화	21
197	사회	일과 여가	항업	21
198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협력과 경쟁	21
199	한국 지리	다양한 우리 국토	호남 지방	21
200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호란	21
201	세계사	현대 세계의 변화	1·2차 세계대전	20
202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갈등론	20
203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고조선	20
204	사회	일과 여가	구인광고	20
205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사회	20
206	세계 지리	세계화와 지역 이해	국토 분단	20
207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근대화	20
208	사회	금융 환경과 합리적인 소비	글로벌 시대	20
209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기업 활동	20
210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노동 문제	20
211	한국 지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다문화 가정	20
212	사회 문화	문화와 사회	다문화사회	20
213	사회	개인과 공동체	다수결의 원칙	20
214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대도시	20



215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도시 재개발	20
216	법과 정치	개인생활과 법	민법	20
217	사회 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복지제도	20
218	법과 정치	개인생활과 법	부동산	20
219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분업	20
220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 구조	20
221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 명목론	20
222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사회 변동	20
223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사회법	20
224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화	20
225	세계 지리	세계화와 지역 이해	생태 공간	20
226	한국 지리	지형 환경과 생태계	생태계	20
227	한국 지리	기후 환경의 변화	생활양식	20
228	사회 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성 불평등	20
229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시장 경제	20
230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신분제	20
231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신용	20
232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애국 계몽 운동	20
233	한국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양반문화	20
234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탐구	양적 연구	20
235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여가 공간	20
236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임오군란	20
237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자산	20
238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재정 활동	20
239	경제	시장과 경제 활동	정부 개입	20
240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20
241	동아시아사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제국주의	20
242	세계 지리	경제 활동의 세계화	조선	20
243	한국 지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20
244	사회	세계화와 상호 의존	지역경제통합	20
245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청산하다	20

246	사회	세상 이해	통계적 오류	20
247	한국사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파시즘	20
248	세계사	현대 세계의 변화	평화	20
249	한국 지리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해석	20
250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갑신정변	19
251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공적	19
252	사회	금융 환경과 합리적인 소비	과소비	19
253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광무개혁	19
254	동아시아사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국제 연대	19
255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국제기구	19
256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분쟁	19
257	한국 지리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국토의 정체성	19
258	동아시아사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군국주의	19
259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근대 사회	19
260	사회 문화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기능론	19
261	세계 지리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기후 환경	19
262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원리	대통령	19
263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대한제국	19
264	한국 지리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도시체계	19
265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도시화	19
266	사회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바이오에너지	19
267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백제	19
268	법과 정치	민주정치와 법	법치주의	19
269	한국 지리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분석	19
270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불교	19
271	사회 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산업화	19
272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상호 문화 개방	19
273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생산	19
274	한국 지리	다양한 우리 국토	수도권	19
275	한국 지리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수집	19

276	동아시아사	국가의 형성	신석기	19
277	세계 지리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의 도시	여가 공간	19
278	한국사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여성의 지위	19
279	한국 지리	다양한 우리 국토	영동·영서 지역	19
280	세계사	지역세계의 재편과 성장	오세아니아	19
281	경제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외환 시장	19
282	경제	국민 경제의 이해	인플레이션	19
283	경제	경제 생활과 경제 문화의 이해	자발적	19
284	한국 지리	다양한 우리 국토	자본주의	19
285	한국사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저항	19
286	법과 정치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정부형태	19
287	동아시아사	오늘날의 동아시아	제2차 세계대전	19
288	한국사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제국주의	19
289	사회 문화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종교의 기능	19
290	경제	경제 생활과 금융	지출	19
291	사회	다양성과 관용	차이	19
292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구조	탐관료제	19
293	세계사	문명의 성립과 통일제국	통일제국	19
294	경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합리적 소비	19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손연기(서울시립대학교)



## 연구 요약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며 최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각(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이 다문화가족으로도 전이될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가구의 비중이 현저히 높으며, 결혼이민자의 취업형태가 저숙련 직종위주여서 안정적 소득확보곤란과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집단 따돌림, 소극적인 대인관계, 정체성 혼란 문제 등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언어발달 및 학습장애도 사회적응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간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비중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예산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sup>1)</sup>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도가 지극히 빠른 가운데 ICT의 영향이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는 현재 성장하는 이른바 2세대들의 정체성과 고용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후적, 수동적 정보격차 해소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화로 사회배제 등의 사회문제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 추진 필요하다.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일방적인 동화정책에서 상호 융화정책으로 전환하여야한다. 다문화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일시적·중복적·시혜적 정책보다는 장기적·종합적이며, 자립역량을 확충하는 정책에 무게를 실는 것이 효과적이다.

---

1) 다문화인구의 '초기진입기'에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0%내외가 되는 '확산기'에는 사회적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다문화인구 비중이 10%가 넘어서면서 다양한 사회적 마찰이 수면위로 부상

주요 실천과제로는 아래와 같다.

1. 정보화 역량강화 중점계층 선정
2. 소통적 정보복지사회의 웹기반 환경 구축
3. 다문화구성원의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기회 환경조성
4. 수요자 지향적 정보활용 및 콘텐츠 제공
5.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의 확충
6. 범국가적 수준의 다문화 통합거버넌스 구축



# 목 차

I. 서론 .....	1
II. 다문화가족 정책현황 .....	3
III. 정보격차 .....	5
1. 정보격차의 정의 .....	5
2. 정보격차 관련 이론 .....	7
가.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확산이론」 .....	7
나. 정보격차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	8
다.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 .....	8
3. 정보격차에 대한 프레임 .....	10
4. 신 디지털 격차 .....	11
5. 정보격차와 스마트격차 .....	12
IV. 정보격차현황과 지수 .....	13
1. 정보격차 현황 .....	13
가. 가구 컴퓨터 보유율 .....	13
나. 인터넷 이용 현황 .....	14
다. 인터넷 이용시 애로사항 .....	15
라. 인터넷 심화역량 수준 .....	17
마.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	18
바.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	20
사. 인터넷 이용의향 .....	22
아. 스마트폰 보유 현황 .....	23
자. 스마트폰 비이용 주이유 .....	24

차. 스마트폰 이용 효과 .....	25
카.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	26
타.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	27
파.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의향 .....	28
2. 정보격차지수 .....	29
3. 모바일 격차지수 .....	30

**V. 다문화가족 정보격차해소 정책 추진 내용 ..... 31**

1. 실용적 정보화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 정보화지원 강화 .....	31
가. 현 황 .....	31
나. 추진내용 .....	31
다. 추진방안 .....	31
2. <다문화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실시 .....	32
가. 현 황 .....	32
나. 추진내용 .....	32
다. 추진방안 .....	32
3. 다국어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33
가. 현 황 .....	33
나. 추진내용 .....	33
다. 추진방안 .....	33
4.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 보급' .....	34
가. 현 황 .....	34
나. 추진내용 .....	34
다. 추진방안 .....	34
5.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정보화 지원 .....	35
가. 현 황 .....	35
나. 추진내용 .....	35
다. 추진방안 .....	35

6.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36
가. 현 황 .....	36
나. 추진방안 .....	36
<b>VI. 정보격차해소정책 과제 .....</b>	<b>38</b>

## 표 목 차

<표-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	3
<표-2> 정보격차의 여러 유형 .....	5
<표-3> 주요 정보격차 정의 .....	6
<표-4> 정보격차에 대한 세가지 접근의 비교 .....	9
<표-5> 연령·학력·소득별 가구 컴퓨터 보유율 .....	13
<표-6>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률 .....	14
<표-7> 인터넷 이용시 애로사항 .....	16
<표-8>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16
<표-9>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	19
<표-10> 인터넷 비이용 이유 .....	20
<표-11>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	21
<표-12>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의향률) .....	22
<표-13> 연령·학력·소득별 스마트폰 보유율 .....	24
<표-14> 연령·학력·소득별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 .....	25
<표-15>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 .....	25
<표-16> 연령·학력·소득별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 .....	26
<표-17> 연령·학력·소득별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 .....	27
<표-18> 연령·학력·소득별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 .....	28
<표-19> 부문별 격차지수(점) 및 대비수준 .....	30

## 그 립 목 차

[그림-1] 가구 컴퓨터 보유율 .....	13
[그림-2] 인터넷 이용률 .....	14
[그림-3]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15
[그림-4]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 심화역량 수준 .....	17
[그림-5] 일반국민 대비 인터넷 심화 이용능력 .....	17
[그림-6]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역기능 대처능력 .....	18
[그림-7]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	19
[그림-8] 가구내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	20
[그림-9] 인터넷이용 의향을 .....	22
[그림-10] 스마트폰 보유율 .....	23
[그림-11] 전체국민 대비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 .....	23
[그림-12]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 .....	24
[그림-13]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여부 .....	26
[그림-14]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여부 .....	27
[그림-15]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 .....	28
[그림-16] 부문별 정보격차지수 .....	29
[그림-17]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방안 .....	39



## I. 서론

우리는 인터넷, 디지털, 글로벌 그리고 정보와 지식 기반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식정보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더불어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 능력 및 보유 여부가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 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제환경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구 경제의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 경제의 핵심자원인 정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Drucker1993; Reich 1992).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신문 등장 등을 통한 국민의 사회 및 정치참여 확대, 전자상거래, 산업정보화 등을 통한 정보경제의 급부상,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범죄 등의 디지털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개인, 조직 및 국가가 있는 반면, 정보·지식의 독점 및 불평등으로 인하여 이를 향유하지 못해 기존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불평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식정보시대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폰을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기존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모바일 정보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 및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으로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IT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규모는 2008년 34만명에서 2011년 55만명으로 약 60%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1만명에서 2020

년 3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은 2020년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9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며 최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각(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이 다문화가족으로도 전이될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가구의 비중이 현저히 높으며, 결혼이민자의 취업형태가 저숙련 직종위주여서 안정적 소득확보곤란과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집단 따돌림, 소극적인 대인관계, 정체성 혼란 문제 등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언어발달 및 학습장애도 사회적응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간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비중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예산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sup>1)</sup>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도가 지극히 빠른 가운데 ICT의 영향이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는 현재 성장하는 이른바 2세대들의 정체성과 고용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후적, 수동적 정보격차 해소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화로 사회배제 등의 사회문제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 추진 필요하다.

---

1) 다문화인구의 '초기진입기'에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0%내외가 되는 '확산기'에는 사회적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다문화인구 비중이 10%가 넘어서면서 다양한 사회적 마찰이 수면위로 부상



## II. 다문화가족 정책현황

우리나라는 한국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국내외 거주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시급하다. 다문화정책의 법적 근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중앙 부처들은 2006년 이후 경쟁적으로 다문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sup>1)</sup>. 2010년 5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마련<sup>2)</sup>하고 있지만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과소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 조정기능도 미흡하다. 다문화정책이 단순한 지원정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간 연계를 충분히 고려해 재정투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부 처	주요 프로그램	예산 <sup>3)</sup> (억원)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취업역량 강화	○ 1366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827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족 방과후교육 실시	○ 불법체류 자녀 교육권 보장	532
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자의 의료 지원	○ 공공무조(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231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96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채용 기업 지원	159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센터 운영	○ 아시아 열린문화축제사업 추진	72
합 계		2,104	

1) 다문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등에서는 정부정책과제를 개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가족지원, 국제결혼중개 관리,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가 골간

3) 2012년 기준으로 합계는 기타부처(농림수산물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예산 87억원 포함(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더욱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이해를 높이고 경제인구로 자리잡도록 정보격차해소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2006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중심이되어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11 신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지수 수준이 일반국민대비 71.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결혼이민자 여성이 일반국민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위한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는 결정적인 사회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는 정보문화의 영역에서 점차 배제되어 온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정보격차해소라는 과제는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 III. 정보격차

인터넷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존 취약계층 과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와 탈북자와 같은 신정보화 취약계층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 많은 학자, 국가, 시민단체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정보분배(Digital dividend),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등 다양한 개념으로 학자 및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그간의 정보격차의 유형, 정의, 정보격차 관련 이론,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보격차의 정의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Accessibility), 역량(Literacy) 및 (생산적인)활용(Productivity)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생각할 수 있다. 정보격차의 유형을 정보격차의 주체, 대상물, 심화정도, 매커니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2> 정보격차의 여러 유형

정보격차의 여러 측면	정보격차의 종류
정보격차의 주체	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민간과 공공간, 장애인, 탈북자, 결혼이민자와 일반인간, 국가간 정보격차
정보격차의 대상물	아날로그정보 격차와 디지털정보(컴퓨터, 모바일) 격차, 일상생활정보 격차와 업무관련정보 격차
정보격차의 심화정도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정보격차의 매커니즘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역량(생산)격차

위와 같이 정보격차는 다차원의 복합 개념이므로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한 정적으로 개념을 정의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디지털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집단(have)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have-not)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개념의 대표적인 정의로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동 법에서는 정보격차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서의 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다는 정보에의 접근 및 단순 이용만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화 진전상태를 고려한다면 정보격차 정의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활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정보격차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존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접근(Access)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로 정보격차 개념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정보격차 정의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기회의 불평등은 물론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지식의 이용능력 및 활용 수준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3> 주요 정보격차 정의

구 분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 정의
정보격차해소법상의 정의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OECD(2001)의 정의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기회의 불평등은 물론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지식의 이용능력 및 활용 수준의 차이

## 2. 정보격차 관련 이론

학계, 언론계, 정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사회의 정보격차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나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정보격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는 확산이론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격차가설, 그리고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중시하는 현실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확산이론」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초기의 많은 정보사회 예찬론자들은 정보격차를 사회문제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더라도 정보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았다. 이들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기술 보급의 S모형에 의한 확산이론이다. S모형에 의하면 보급 초기에는 엘리트들만이 수용하여 기술의 수용과 확산이 느리지만, 성숙단계가 되면 다수가 기술을 수용하게 되어 기술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수용하게 되는 시점에는 기술 확산 속도는 늦으나 포화상태로서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단계가 된다고 한다. 확산이론에 따르면, 인터넷 역시 현재는 보급률이 낮지만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매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전화, 라디오 TV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체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전화, 라디오, TV와는 달리 컴퓨터 및 인터넷은 스스로 진화하며 발전하고 또한 단순히 접근의 격차가 아니라 이용 및 활용에 따라 많은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낙관론자들의 예측대로 TV처럼 일상화되기보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 이용 및 활용 할 수 없는 단절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들도 많다.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확산이론의 반대입장인 정보격차가 갈수록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정보격차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정보격차 가설은 확산이론과는 달리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약화되기 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의 정보격차 확대 가능성은 우선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디오, TV, 전화 등의 전통적인 매체는 크기, 가격, 질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매체이므로 인터넷 접속과 사용에서의 계층화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접근센터나 도서관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과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 간 격차, 초고속 Mobile Internet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격차 등 새로운 격차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능력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 외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이용능력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용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력 수준이 낮거나 정보통신관련 교육 기회를 손쉽게 얻지 못한 저소득층, 전업주부, 농어민 등의 소외계층들은 정보접근 및 활용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체적 불편 때문에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집단 역시 이들의 접근성을 배려하는 기기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보 취약집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집단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집단간의 격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다.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은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축소될 것인가와 같은 이론적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 대안 모색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부가 취하는 입장으로서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해결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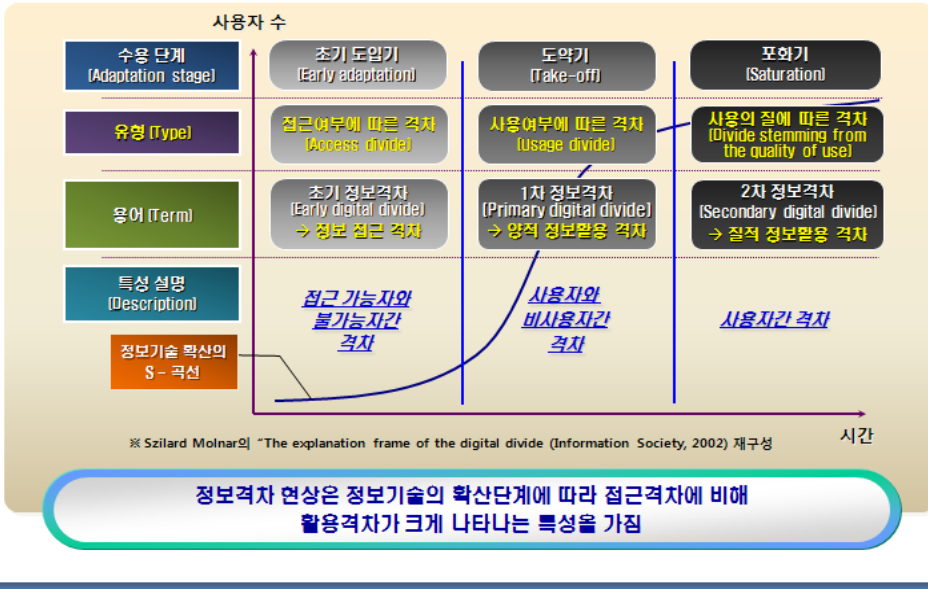
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정부의 정책 개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확산 이론과는 다르며, 정보격차를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매체의 보유 및 이용능력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정보격차가설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정보격차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을 정보격차의 원인 및 정보격차 해결방법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표-4> 정보격차에 대한 세가지 접근의 비교

구 분	정보격차의 원인	정보격차 해결 방법
확산 이론	· 새로운 기술의 보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시장경쟁체제 유지를 통한 가격하락과 기술 개발 ·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적극 개입은 불필요
격차 가설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만성적 부재 · 정보통신기술과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 저소득주민 및 개도국에게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실질적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저소득주민 및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무상 보급 및 무료 정보화교육기회 제공 · 무분별한 시장경쟁체제를 지양하고 정보의 공유 및 공공성 강조
현 실 론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일시적 부재	· 저소득주민 및 개도국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 ·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화교육강화 ·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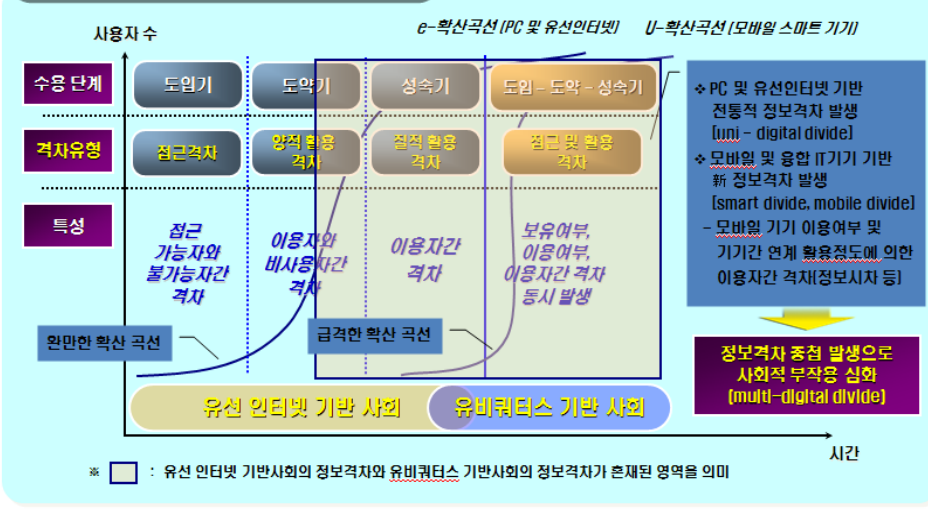
### 3. 정보격차에 대한 프레임

#### 정보격차 프레임(Digital Divide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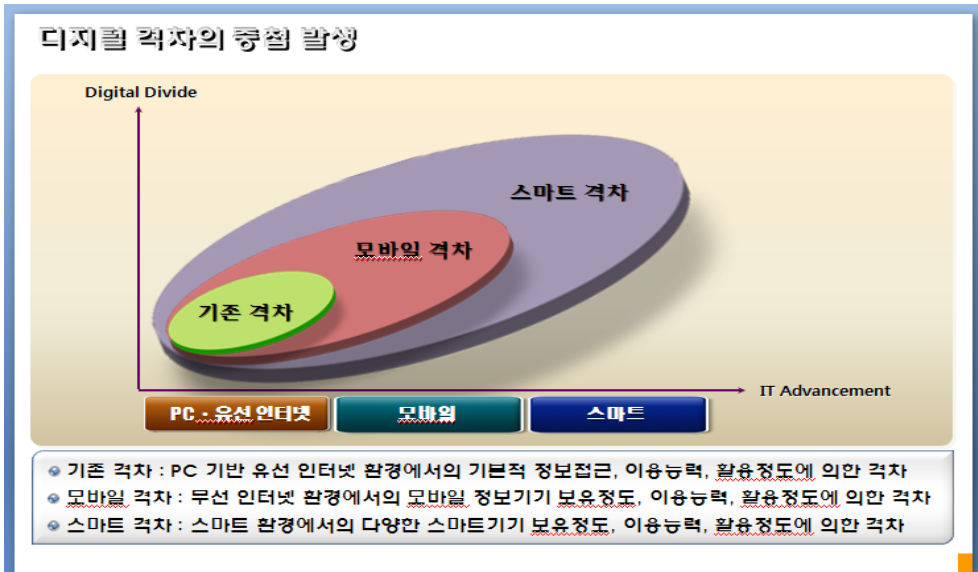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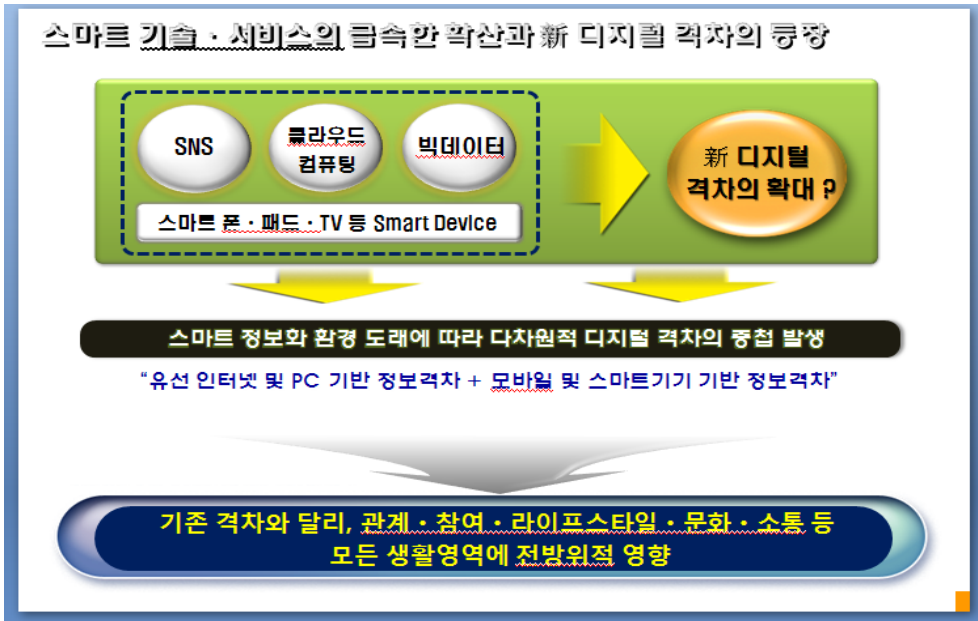
#### 신기술 기반 정보격차 프레임

#####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프레임





#### 4. 신 디지털 격차



## 5. 정보격차와 스마트격차

### 신(新) 디지털 격차 선제적 대응



- IT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존 정보격차',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격차', '스마트 TV 등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의한 스마트 격차' 등 향후 3종의 디지털 격차가 중첩되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정보사회도래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정도 및 삶의 질 더욱 하락

### 신(新) 디지털 격차 선제적 대응

다차원적 디지털 격차 발생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취약집단 등장



-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모바일 스마트 환경의 도래에 따른 '이중적 분할(Double divide)' 발생
    - > 집단간 분할(inter-group) :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접근 격차
    - > 집단내 분할(intra-group) :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자간 질적 활용격차 및 이용성과 격차
    - ※ 통신사의 스마트폰 위주 출시전략 등에 따라 접근격차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활용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정보, 관계, 라이프스타일, 참여의 격차 발생 → 사회, 경제, 문화적 불평등 야기 → 갈등증폭, 통합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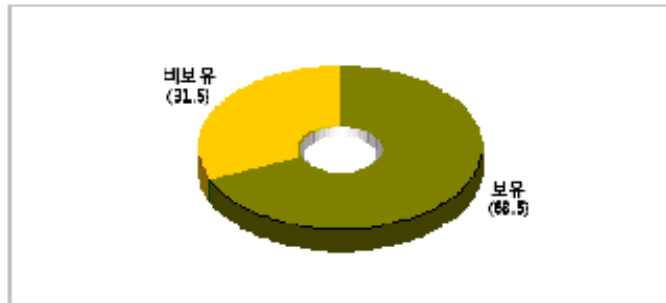
비자발적 및 자발적 비이용 집단, 제한적 이용집단별로 특화된 맞춤형 신(新)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의 개발·추진 필요

## IV. 정보격차현황과 지수1)

### 1. 정보격차 현황

#### 가. 가구 컴퓨터 보유율

결혼이민자 컴퓨터 보유율은 68.5%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81.9%보다 13.4%p 낮게 나타났다.



[그림-1] 가구 컴퓨터 보유율 (%)

컴퓨터 보유율은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5> 연령·학력·소득별 가구 컴퓨터 보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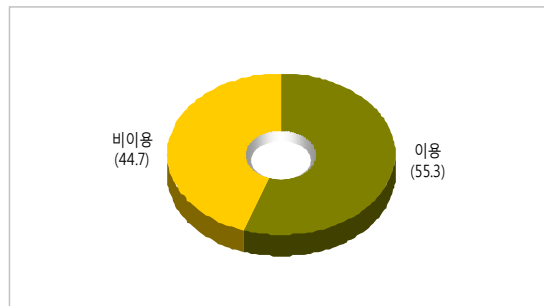
구분		가구 컴퓨터 보유율
연령별	20대 이하	66.7
	30대	69.8
	40대 이상	69.3

1) 2011 신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보고서 인용

구 분		가구 컴퓨터 보유율
학 력 별	중 졸 이 하	57.6
	고 졸	73.6
	대 졸 이 상	78.5
월 가 구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56.4
	100~199만원	67.8
	200만원 이상	75.6
전 체		68.5

## 나.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 이용률은 55.3%로, 전체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78.3%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그림-2] 인터넷 이용률 (%)

저 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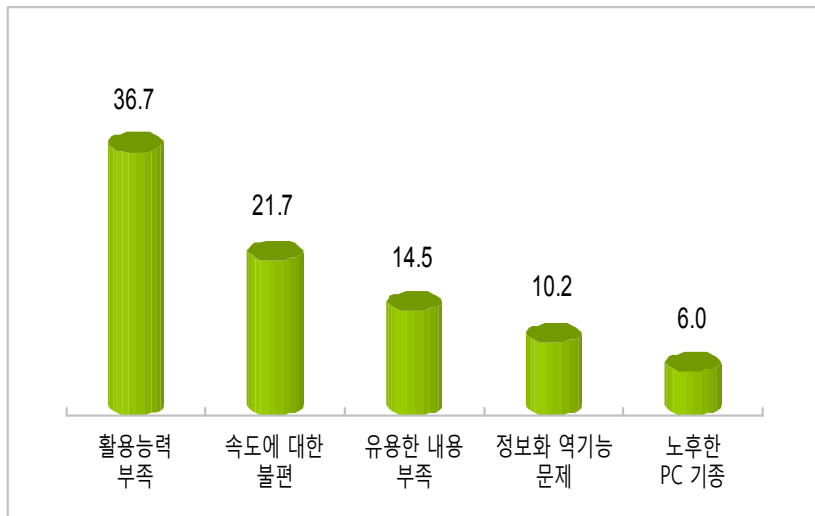
<표-6>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률 (%)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연령별	2 0 대 이 하	59.6
	3 0 대	55.9
	4 0 대 이 상	48.0

구 분		인터넷 이용률
학력별	중 졸 이 하	38.2
	고 졸	57.7
	대 졸 이 상	76.4
월가구 소득별	100 만 원 미만	41.6
	100~199 만 원	51.0
	200 만 원 이상	67.8
전 체		55.3

#### 다. 인터넷 이용시 애로사항

1순위 기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결혼이민자의 36.7%가 '활용 능력 부족'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속도에 대한 불편(21.7%)', '유용한 내용 부족(14.5%)', '정보화 역기능 문제(10.2%)', '노후한 컴퓨터 기종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의 불편함(6.0%)' 등의 순이다.



※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그림-3]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 1순위 기준

<표-7> 인터넷 이용시 애로사항 (%) -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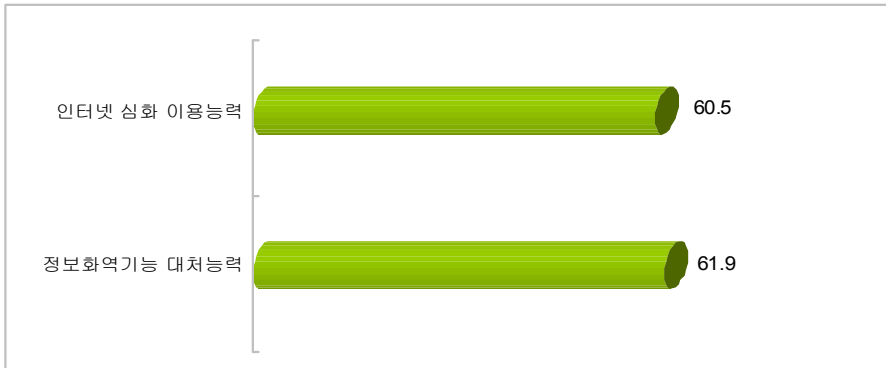
순위	인터넷 이용시 애로사항	비율
1	활용능력 부족	36.7
2	속도에 대한 불편	21.7
3	유용한 내용 부족	14.5
4	정보화 역기능 문제	10.2
5	노후한 PC 기종	6.0
6	이용비용의 부담	3.9
7	식구들과의 공동사용 불편함	2.7
8	신체계약으로 인한 어려움	0.9
*	없다	0.6
*	모름/무응답	2.7

1순위 기준, '활용능력 부족'은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월소득 100~199만원 (42.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속도에 대한 불편'도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높게 응답되었으며, '유용한 내용 부족'은 30대(20.2%)에서,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8>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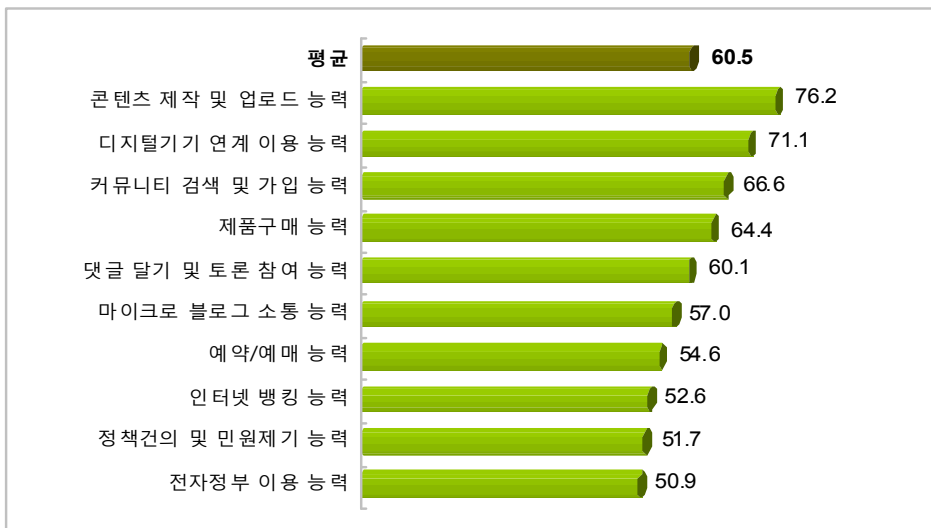
구분		활용능력 부족	속도에 대한 불편	유용한 내용 부족	정보화 역기능문제	노후한 PC 기종
연령별	20대 이하	49.3	24.3	11.0	5.9	1.5
	30대	26.6	20.2	20.2	14.5	7.3
	40대 이상	30.6	19.4	11.1	11.1	12.5
학력별	중졸 이하	50.7	30.1	4.1	1.4	4.1
	고졸	38.4	19.6	19.6	11.6	2.9
	대졸 이상	28.2	17.3	16.4	12.7	11.8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38.1	31.0	11.9	2.4	4.8
	100~199만원	42.1	24.1	14.3	9.0	4.5
	200만원 이상	33.1	15.8	15.1	14.4	8.6
전체		36.7	21.7	14.5	10.2	6.0

## 라. 인터넷 심화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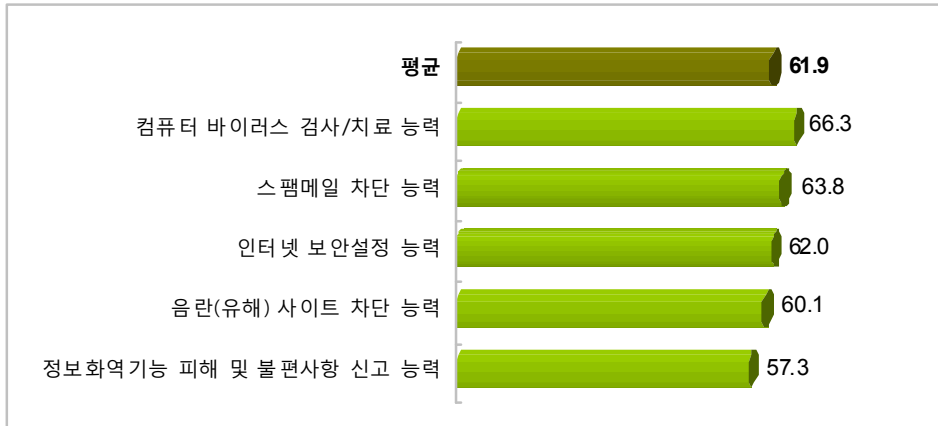
[그림-4]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 심화역량 수준(%) - 인터넷 이용자 기준  
 ※ 일반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결혼이민자의 일반국민 대비수준을 의미

인터넷 이용자 기준, 결혼이민자의 세부항목별 일반국민 대비 인터넷 심화 이용능력 분석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일반국민의 50~7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자정부 이용 능력', '정책 건의 및 민원제기 능력', '인터넷 뱅킹 능력'은 일반국민의 50% 초반대 수준으로 타 항목에 비해 더욱 낮았다.



[그림-5] 일반국민 대비 인터넷 심화 이용능력(%)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인터넷 이용자 기준, 결혼이민자의 세부항목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역기능 대처능력은 일반국민의 50~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6]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역기능 대처능력(%) - 인터넷 이용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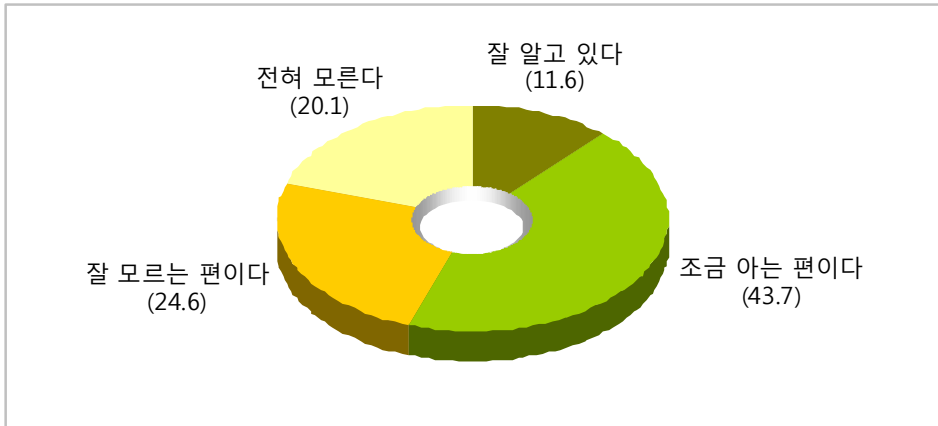
- ※ 일반국민의 항목별 역기능 대처능력을 100으로 가정할 때, 결혼이민자의 일반국민 대비 수준임
- ※ 평균은 각 항목별 대비 수준의 산술평균이며, 인터넷 이용자 기준임
- ※ 주1) 신고기관 및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의미

같은 인터넷 이용층이라 할지라도, 고도화되고 있는 IT 환경에서 일상생활내 가치 창출 및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에 필요한 인터넷 심화역량 수준도 결혼이민자가 일반국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정보 생산·공유·소비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응용용도 기반 정보활용의 심화능력 제고 정책의 개발·추진 필요하다.

#### 마.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55.2%(잘 알고 있다: 11.6% + 조금 아는 편이다: 43.7%)로 나타났다.





[그림-7]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

※ 인터넷 비이용층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20대(66.3%), 고졸(56.4%), 월소득 100~199만원(59.4%)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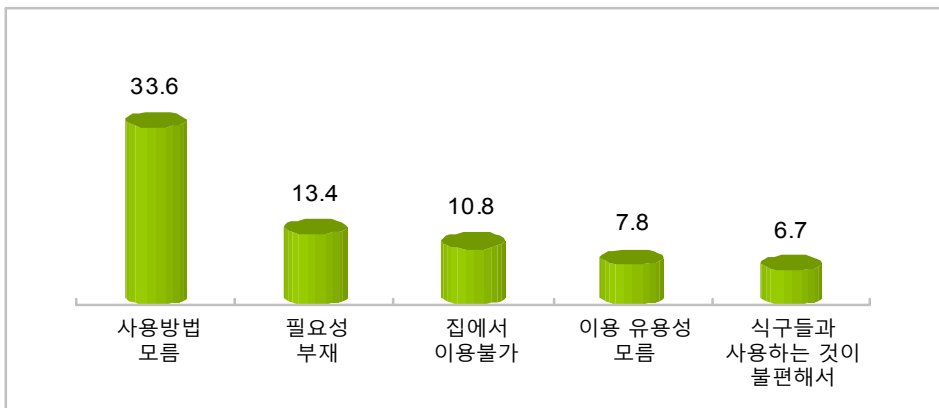
<표-9>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

구분		인지	비인지
연령별	20대 이하	66.3	33.7
	30대	53.1	46.9
	40대 이상	56.5	43.5
학력별	중졸 이하	54.2	45.8
	고졸	56.4	43.6
	대졸 이상	33.3	66.7
월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54.2	45.8
	100~199만원	59.4	40.6
	200만원 이상	51.5	48.5
전체		55.2	44.8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 바.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순위 기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33.6%)'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13.4%)', '집에서 이용불가(10.8%)', '이용 유용성 모름(7.8%)', '식구들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8] 가구내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 - 1순위 기준

※ 인터넷 비이용층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표-10> 인터넷 비이용 이유 (%) - 1순위 기준

순위	인터넷 비이용 이유	비율
1	사용방법 모름	33.6
2	필요성 부재	13.4
3	집에서 이용불가	10.8
4	이용 유용성 모름	7.8
5	식구들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6.7
6	주위사람 대부분이 비이용	5.6
7	비용의 부담	4.9
8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2.2

순위	인터넷 비이용 이유	비율
9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걱정되어서	2.2
10	신체계약으로 인한 어려움	1.5
11	필요 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0.7
*	기타	1.1
*	없다	0.4
*	모름/무응답	9.0
합 계		100.0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는 40대이상(35.9%), 저학력일수록, 저소득일수록 더 높았고 ‘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고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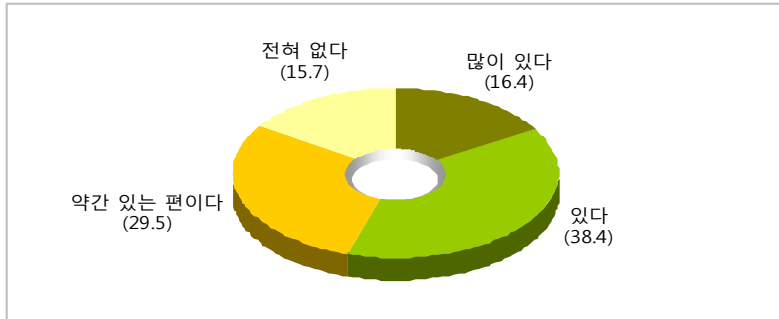
<표-11>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 - 1순위 기준

구 분		사용방법 모름	필요성 부재	집에서 이용불가	이용 유용성 모름	식구들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연령별	20대 이하	37.0	12.0	14.1	8.7	2.2
	30대	28.6	13.3	9.2	11.2	7.1
	40대 이상	35.9	15.4	9.0	2.6	11.5
학력별	중졸 이하	41.5	11.0	17.8	5.1	1.7
	고졸	28.7	15.8	5.9	7.9	6.9
	대졸 이상	14.7	20.6	2.9	20.6	23.5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39.0	6.8	13.6	15.3	3.4
	100~199만원	32.8	14.8	13.3	4.7	6.3
	200만원 이상	27.3	16.7	6.1	7.6	9.1
전 체		33.6	13.4	10.8	7.8	6.7

※ 1순위 및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 사. 인터넷 이용의향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기준, 인터넷 이용의향률은 84.3%(많이 있음: 16.4% + 있음: 38.4% + 약간 있는 편이다: 29.5%)로 나타났다.



[그림-9] 인터넷이용 의향률(%)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인터넷 이용의향률은 대졸이상(91.2%), 월소득 100~199만원(87.5%), 저연령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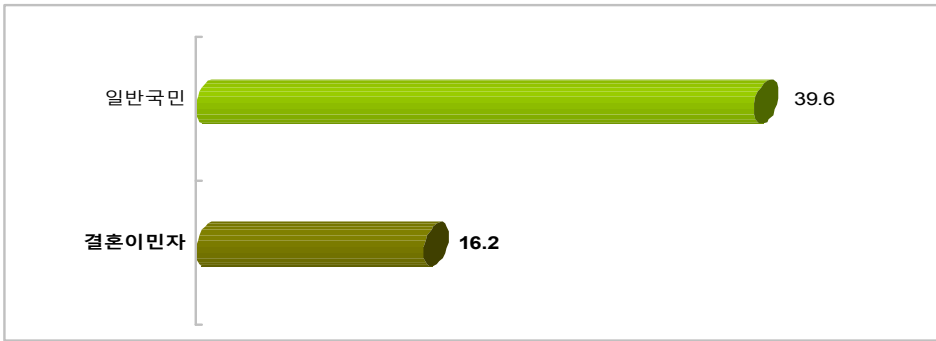
<표-12> 연령·학력·소득별 인터넷 이용의향률 (%)

구 분		인터넷 이용의향률
연 령 별	2 0 대 이 하	91.3
	3 0 대	83.7
	4 0 대 이 상	76.9
학 력 별	중 졸 이 하	84.7
	고 졸	82.2
	대 졸 이 상	91.2
월 가 구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83.1
	100~199만원	87.5
	200만원 이상	80.3
전 체		84.3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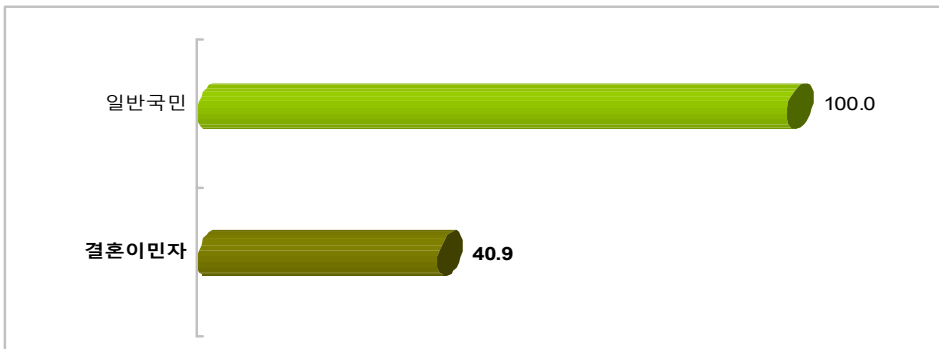
## 아. 스마트폰 보유 현황

2011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6.2%로 전체국민(39.6%)에 비해 23.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체국민 대비 결혼이민자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전체국민의 40.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급격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이용의 심화 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일반국민간 스마트폰 이용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0] 스마트폰 보유율 (%)

※ 전체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은 6세 이상 추계인구('11년) 중 스마트폰 가입자수('11.10월) 비율임



[그림-11] 전체국민 대비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 (%)

※ 대비수준은 전체국민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할 때, 전체국민 대비 결혼이민자의 이용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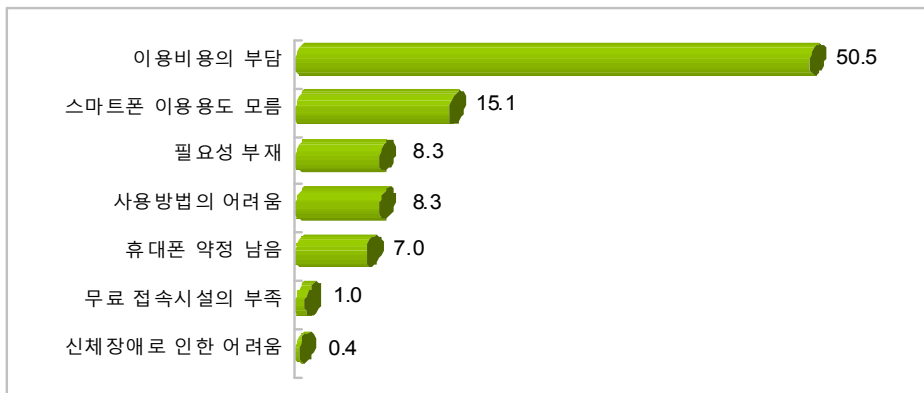
스마트폰 보유율은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13> 연령·학력·소득별 스마트폰 보유율 (%)

구분		보유율
연령별	20대 이하	21.5
	30대	16.7
	40대 이상	7.3
학력별	중졸 이하	13.1
	고졸	15.5
	대졸 이상	22.9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9.9
	100~199만원	11.9
	200만원 이상	24.9
전체		16.2

#### 자. 스마트폰 비이용 주이유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는 '이용비용의 부담'이 5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용도 모름(이용 효용성 모름)(15.1%)', '필요성 부재(8.3%)', '사용방법의 어려움(8.3%)', '기존 휴대폰 약정이 남음(7.0%)', '무료 접속시설의 부족(1.0%)', '신체장애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0.4%)' 등의 순이다.



[그림-12]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 (%)

※ 주 이유 1개를 선택하도록 한 응답률 기준임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로 '이용 비용의 부담'은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용도 모름'과 '필요성 부재', '사용방법의 어려움'은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14> 연령·학력·소득별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 (%) - 1순위 기준

구 분		이용비용의 부담	이용용도 모름	필요성 부재	사용방법의 어려움	휴대폰 약정 납음
연령별	20대 이하	54.2	15.1	4.5	12.3	7.8
	30대	49.2	16.2	10.3	4.3	5.9
	40대 이상	47.5	13.7	10.8	8.6	7.2
학력별	중졸 이하	48.8	19.3	11.4	9.0	6.0
	고졸	54.5	12.4	6.9	7.9	6.4
	대졸 이상	53.2	9.9	8.1	7.2	9.9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48.4	15.4	4.4	6.6	6.6
	100~199만원	49.1	15.2	12.2	10.4	5.7
	200만원 이상	51.3	15.6	5.8	5.8	10.4
전 체		50.5	15.1	8.3	8.3	7.0

※ 스마트폰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 차. 스마트폰 이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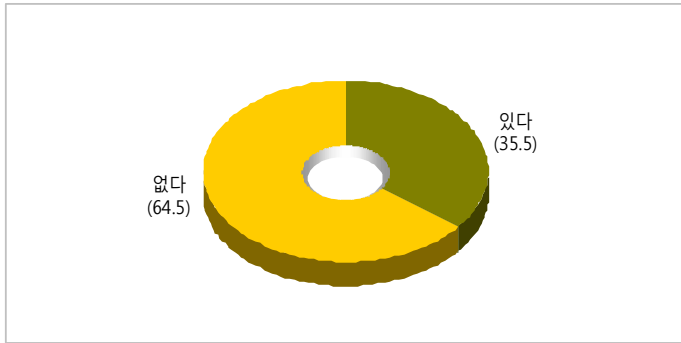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은 '일상생활 편리성 증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습득 정보량 증가' 등 취약계층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

구 분	'그렇다' 비율 (%)
(1)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졌다	65.8
(2)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줄었다	59.5
(3)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	57.7
(4)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	52.3
(5)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	49.5
(6) 새로운 사람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46.8
(7) 새로운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39.6
(8)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36.0
(9) PC를 통한 유선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었다	35.1

### 카.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컴퓨터·인터넷 관련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35.5%로 나타났다.



[그림-13]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여부 (%)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30대(40.1%),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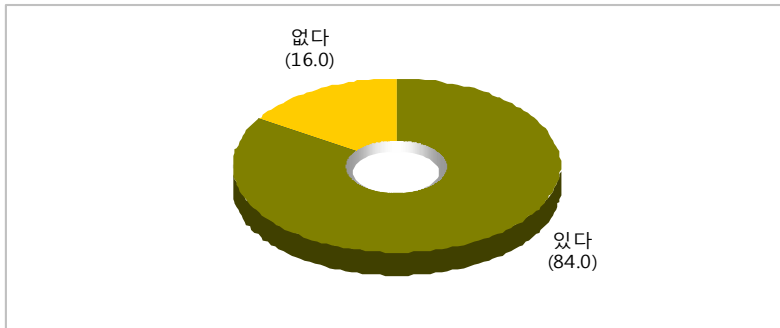
<표-16> 연령·학력·소득별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 (%)

구분		수강 경험률
연령별	20대 이하	32.9
	30대	40.1
	40대 이상	32.7
학력별	중졸 이하	26.2
	고졸	35.1
	대졸 이상	52.8
월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32.7
	100~199만원	31.0
	200만원 이상	42.0
전체		35.5



#### 다.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자 기준,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84.0%로 조사된다.



[그림-14]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여부 (%)

※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자 기준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30대,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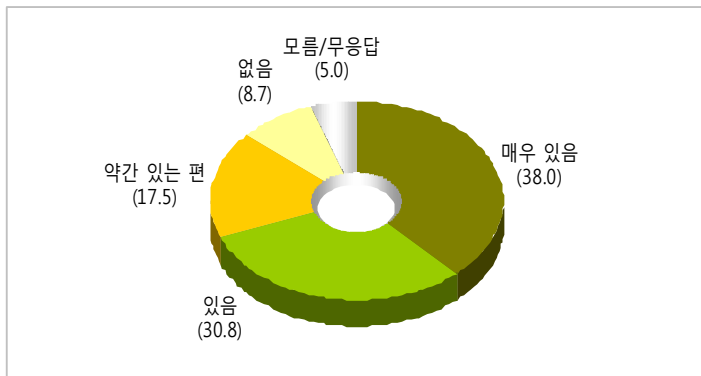
<표-17> 연령·학력·소득별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 (%)

구 분		수강 경험률
연 령 별	20대 이하	81.3
	30대	80.9
	40대 이상	93.9
학 력 별	중졸 이하	86.0
	고졸	86.9
	대졸 이상	78.9
월 가 구 별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90.9
	100~199만원	86.4
	200만원 이상	76.7
전 체		84.0

※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자 기준

파.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의향

정보화교육 수강 비경험자의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은 86.3%(매우 있음: 38.0% + 있음: 30.8% + 약간 있는 편: 17.5%)로 나타났다.



[그림-15]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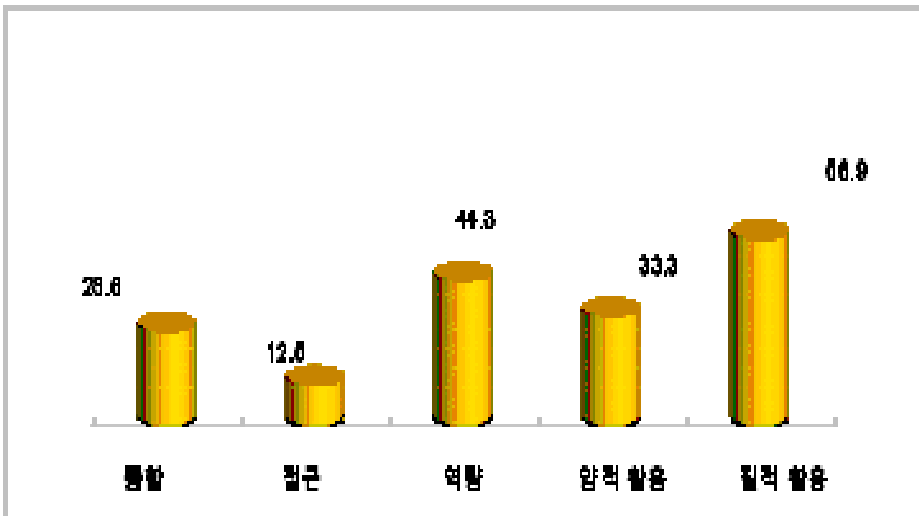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은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18> 연령·학력·소득별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 (%)

구분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
연령별	20대 이하	90.4
	30대	86.9
	40대 이상	79.3
학력별	중졸 이하	86.4
	고졸	87.0
	대졸 이상	88.9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86.1
	100~199만원	85.8
	200만원 이상	86.3
전체		86.3

## 2. 정보격차지수

- ◆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국민과 결혼이민자간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
  -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결혼이민자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 신소의 계층간 격차 산출
- ※ 정보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 수준이 큰 것을 의미
  - 종합 격차지수 :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종합한 정보화 수준의 격차 측정
  - 접근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 측정
  - 역량 격차지수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 측정
  - 양적 활용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의 사용량으로서 양적 사용 수준의 격차 측정
  - 질적 활용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사용의 질로서 질적 사용 수준의 격차 측정



[그림-16] 부문별 정보격차지수 (점)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정보화수준

※ 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표-19> 부문별 격차지수(점) 및 대비수준 (%)

구 분	결혼이민자	
	격차지수	대비수준
접 근	12.5	87.5
역 량	44.3	55.7
활 용	40.0	60.0
양적 활용	33.3	66.7
질적 활용	56.9	43.1
총 합	28.6	71.4

정보접근부문은 일반국민의 87.5%인 반면,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 부문은 40%~60%대 수준으로 나타나, 컴퓨터·인터넷 접근 정도 및 보유 여부와 연관된 정보접근 격차보다 정보 활용능력·활용량·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국민의 80% 이상 수준으로 제고된 정보접근 수준을 실생활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연계시키기 위한 활용격차해소 정책의 추진 강화가 필요하다.

### 3. 모바일 격차지수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47.5%로 일반 정보화 수준(71.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접근 수준 56.4%, 모바일 역량 수준 38.2%, 모바일 활용 수준 46.2%으로 조사되었다.

- \* 일반국민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일반국민 대비 수준을 의미
- \* 모바일 격차지수는 52.5점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모바일 격차가 큰 것을 의미
- \* 모바일 격차지수(Mobile Divide Index) 구성체계 및 산출방식 등 상세사항은 불임자료 참조

## V. 다문화가족 정보격차해소 정책 추진 내용

### 1. 실용적 정보화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 정보화지원 강화

#### 가. 현황

정보화교육이 지식정보사회의 적응력 향상 및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현 정보격차 현황을 감안하여 정보화교육의 확대·집중 추진 필요하다.

#### 나. 추진내용

‘06년부터 ‘10년까지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총 11,469명에게 기초 및 실용교육 실시

- 기관별 수요에 따라 기초·실용과정 운영, 교재 및 기관운영비 지원

#### 다. 추진방안

전국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 결혼이민자 대상 집합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 교육기관 수 확대 및 결혼이민자의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

결혼이민자의 종합적인 역량개발 등으로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대상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 기존의 정보소양 중심의 교육에서 ICT 실용교육으로 전환, 실용적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2. <다문화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실시

### 가. 현황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전국 집합교육장을 통해 실시됨에 따라 교육장에서 원거리 거주자는 정보화교육 기회 적음

- 가정방문 또는 출신국가별 소그룹을 통한 정보화교육 필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국내조기 정착에 어려움 직면

- 국내 정착에 성공한 동일국가 출신자의 정착도우미 역할 필요

### 나. 추진내용

한국어와 IT기본소양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 양성(58명), 동일 출신국 가정(330가구)에 IT방문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인구현황을 고려, 거주비중이 높은 수도권지역 시범 운영

- 다국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정보화교재 제작·보급 및 PC 미보유 가정에 '사랑의 그린PC(중고PC)' 우선 보급

결혼이민자 IT방문지도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조력자(멘토) 그룹 운영, 방문지도사의 원활한 활동 및 효과적 교육운영 지원

### 다. 추진방안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전국 확대 실시

양질의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pool 운영을 위한 표준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 3. 다국어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 현황

결혼이민자에게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혜자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필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IT기술과 이론교육이 학습자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나. 추진내용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기초·활용교재(3종) 및 BL과정(2종) 개발

※ BL(Blended Learning): 학습효과 극대화, 학습기회 확대, 교육시간 및 비용 최적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교육방식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이민자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로 된 정보화교육 기초교재(2종) 제작·배포

- 출신 국가별 결혼이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4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로 번역·제작('11.4)

#### 다. 추진방안

결혼이민자 다국어 교재 확대 제작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 결혼이민자 출신국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국어 교재를 확대 제작

※ 다국어교재 추가 제작 계획 : 태국어, 러시아어(중아시아)

- 결혼이민자의 지역, 거주환경, 수준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추가 개발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 4.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 보급'

##### 가. 현황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접근시설이 열악하거나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많아 이들의 정보생활 지원을 위한 PC 지원 필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정례화('10.7.26)에 따라 인프라가 취약한 현지 가정에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필요

※ '10년도에 3회(한-베트남 2회, 한-필리핀 1회)에 걸쳐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실시

##### 나. 추진내용

'97년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 업그레이드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보급

다문화가정 IT방문교육 신청자 중 PC 미보유 가정에 우선 보급

##### 다. 추진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상시 보급

-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보급물량 확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결혼이민자 현지 가정에 <사랑의 그린 PC> 보급

- 베트남, 필리핀 등 전략적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보급 물량 확보

- 화상상봉 대상가정 중 현지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 보급



※ 보급사양(안) : 본체(CPU 3.0Ghz, 메모리 2GB, 하드 160GB), 17"LCD 모니터, 화상통신용웹캠, 스피커 등

## 5.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정보화 지원

### 가. 현황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

- 대부분 시·군 단위로 지원, 읍·면단위는 접근성 취약

※ 정보화마을(인근지역 포함) 결혼이주여성: 75천명(2009년도 외국인주민현황 인용)

※ 농어촌 외국인 이주여성: ('09년) 혼인한 농림어업종자사 중 35.2%(통계청, '09년)

프로그램관리자를 다문화가정 전문교육 강사로 양성, 정보화마을을 활용하여 배려

· 지원 확대, 사회통합 지원 필요

※ 프로그램관리자 : '07년부터 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마을당 1명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민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등 지원

### 나. 추진내용

결혼이주여성 등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계획 수립·추진 중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추진 및 전국 정보화마을 362곳에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 '10년도 3회(한-베트남 2회, 한-필리핀 1회), '11년도 1회(한-베트남/필리핀)

### 다. 추진방안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실시

- 전국 정보화마을에 구축되어 있는 마을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인근지역(읍·면) 다

문화가정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상시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화상상봉이 될 수 있는 거점 마련
-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과 모국 가족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화상대화 서비스 실시 및 활성화
- ※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서비스(<http://family.invil.org>)

## 6.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가. 현황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위주의 사업 추진

- 171개 센터 중 약 50%(86개 센터, '10년말 기준)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1회성 단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시설 활용도도 낮은 편

기 구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정보화지원 서비스 필요

### 나. 추진방안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여성부 산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정보의 접근, 이용,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5개 권역 기준, 총 5개 센터를 시범 구축하고 수요 및 이용률 등을 검토하여 확대 운영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경남, 경북),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강원권(강원)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정보화지원서비스 상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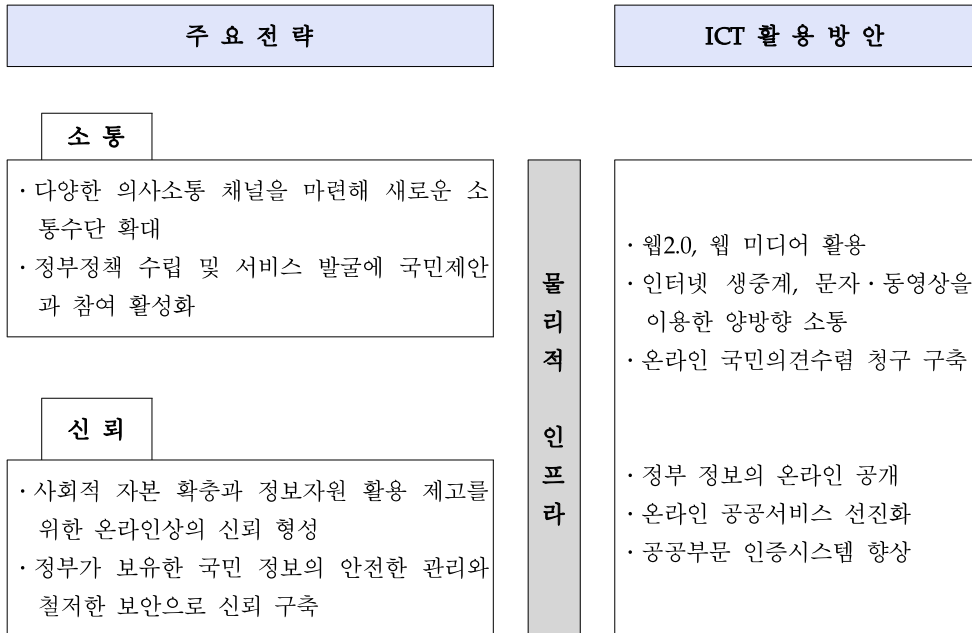
※ 웹을 통해 고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지원 시스템' 구축,  
다국어 정보검색 '인터넷 플라자' 설치, 'IPTV' 설치, 스마트 모바일 활용교육 등  
정보화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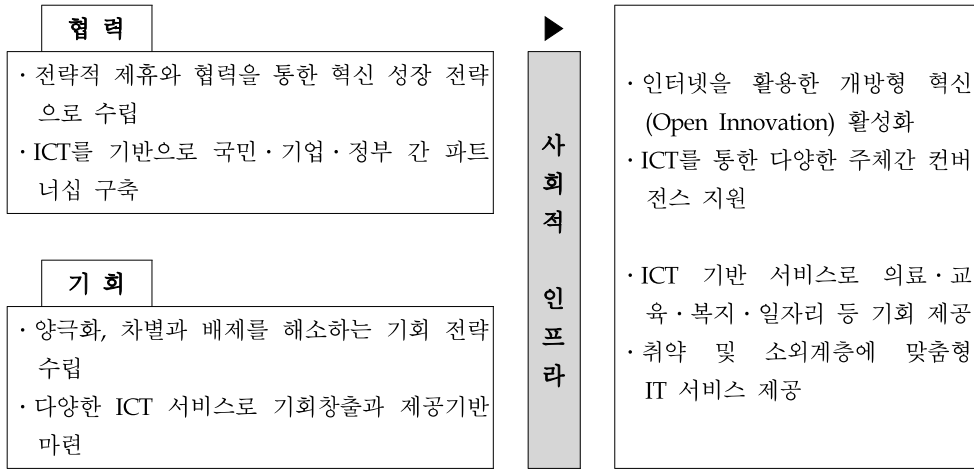
## VI. 정보격차해소정책 과제

현재까지 다문화사회에 관한 정부부처의 ICT 활용정책은 대체로 정보화교육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다. 웹 기반 공공서비스 역시 이주자가 가진 언어 문제와 정보활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축은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범사회적인 다문화 포용 수준의 향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일방적인 동화정책에서 상호 융화정책으로 전환하여야한다. 다문화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일시적·중복적·시혜적 정책보다는 장기적·종합적이며, 자립역량을 확충하는 정책에 무게를 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17]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방안

주요 실천과제로는 아래와 같다.

1. 정보화 역량강화 중점계층 선정

- 정책대상으로 기존의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다변화
  -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편익을 활용하여 사회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기회를 보장하는 노력 전개

2. 소통적 정보복지사회의 웹기반 환경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원하는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단절이나 격차 없는 인터넷 접속환경 및 정보통신망 구축 필요
  - 디지털사회 기반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통합콜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공개포털, 온라인참여 기회 확대

3. 다문화구성원의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기회 환경조성

- 정보이용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활용교육의 지속적 추진뿐 아니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개발
  - 사회교육기관에 의한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이용교육 지원체계 확립,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교육 자원 통합운영, 정규교육과정 질적, 양적 심화, 정보문화 확산 사업 전개 등

#### 4. 수요자 지향적 정보활용 및 콘텐츠 제공

- 지역별·성별·소득수준별·연령별 정보격차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다문화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프로그램 개발

#### 5.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의 확충

- 지식정보화기반 확충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식정보인프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 갈등조정, 사회구성원의 다원화된 제 안수렴, 다양한 참여의 장 제공, 활발한 의견교류를 위한 채널로서 기능
  - 지역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 문화 및 산업·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기반으로 작용

#### 6. 범국가적 수준의 다문화 통합거버넌스 구축

- 정보균형과 통합과제를 주요 국정은 물론 지역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정보기회 창출을 위해 정보접근환경 구축, 정보화교육,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많은 영역의 노력이 필요
- 정부기관 간, 정부·민간 간, 사회계층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 강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 정책 수요 증대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IT 분야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정보와 수준 제고에 초점

※ 고도화 IT 환경도래에 따라 새로운 정보취약집단 등장 → 전국민 대상 디지털 통합 정책 필요 (정책대상 확대)

※ EU는 국가 IT 정책 주요 의제로 디지털 통합 추진 (사회 각 계층의 디지털 참여증진 중시 → 디지털 시민양성)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 ⇒ 전국민 대상 디지털 통합 정책으로의 확대

▶ 포괄적 IT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 통합 정책 추진

> 계층간 정보화수준 간극 축소 위주에서 정보화를 통한 전국민의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각 부문별 포괄적 디지털 참여(digital engagement)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

> IT 정책과 의료·복지·고용·교육·생활 등 타 분야 정책과의 연계 및 민간부문의 협업 강화

##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 정책 프레임

	Digital Divide	Digital Opportunity	Digital Inclusion
정보화 단계	초기 및 확산 단계	성숙 단계	고도화 및 융합 단계
Action Plan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디지털 통합 종합계획 수립 필요
중심 기술 및 기술	PC 및 유선인터넷 기반 - 무선 인터넷 부재	PC 및 유선인터넷 기반 - 제한적 무선 인터넷 환경	융복합 스마트기기 및 무선 인터넷 기반
지향점	정보격차해소 - 정보선도집단과 취약계층간 정보화 간극 축소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기회 확대 - IT를 통한 제한적 가치창출 - IT 분야에 한정된 정책수단	디지털 통합 - 고도화 IT 환경에서 정보화를 통한 실질적 가치창출
정책방향	물리적 정보접근 수준 제고	물리적 정보접근 및 양적 정보활용 수준 제고 - 콘텐츠 접근 제고는 제한적	유비쿼터스, 콘텐츠 정보접근 및 질적 정보활용 수준 제고
정책내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접근격차 해소 * 확산 중심 정책 (H/W 중심)	인터넷 이용률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의 양적 활용격차 해소 * 촉진 중심 정책 (S/W 중심)	모바일 등 新 정보화 수준 제고를 통한 전국민의 질적 활용격차 해소 * 가치창출 중심 정책 (서비스 중심)
정책수단	IT 정책에 국한된 단일 수단	IT 정책과 타 분야 정책간 제한적 연계	복지·일자리 확대 등 가치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 분야 정책과 전면적 연계·융합
정책대상	소외계층 (정책대상 고정) -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법률적 계층 분류에 기반	소외계층 -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법률적 계층 분류에 기반	전체국민 - 고도화 IT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화 수준을 못 갖춘 모든 집단



#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 정책 프레임

정보격차해소(Digital Divide) →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

## AS IS

- 중앙정부 주도 (추진체계 일원화)
- 정보화사·촉진(양적활용) 중심
- 접근 및 활용사업간 연계 미흡
  - 개별적·분절적 사업 운영
  - IT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미흡
- PC 및 유선 인터넷 중심
  - 단일 플랫폼 기반(기기 및 기술간 연계활용에 제한적 초점)
  - 가구 PC 보급 및 접근시설 구축과 개인 정보이용 촉진 (PC, 인터넷 이용자규모 확대)이 시차적으로 진행
- ICT 정책 중심
- 정보격차에 사후적 대응
- 실적(양적 성과) 중심
- 취약계층의 IT 인프라 접근환경 조성 및 양적 정보활용 수준 제고에 초점(정보이용자 규모 확대)

## TO BE

- 정부·지자체·민가의 협업 강화 (추진체계 다변화)
- 질적 정보활용 및 가치창출 중심
- 접근 및 활용사업간 연계 강화
  - 시스템적·가치사슬적 사업 운영
  - IT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에 초점
- 모바일 및 융합 IT기기 중심
  - 멀티 플랫폼 기반(기기 및 기술간 연계활용에 중시)
  - 개인 단위의 스마트프 등 신(新)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활용 수준 제고를 동시적으로 진행
- ICT·복지·생활 등 타 부문간 정책 연계
- 신(新) 디지털 격차에 선제적 대응
- 성과(추진실적을 통한 창출가치) 중심
- 유비쿼터스·콘텐츠 정보 접근 및 창의적 정보활용·생산 수준 제고를 통한 디지털 사회참여에 초점 (디지털 시민 양성)

디지털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치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지원

정책연구 2012-1

---

---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I

---

발행	2012년 12월
발행처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주소	대전시 동구 자양동 155-3(300-718) 전화 : (042) 629-6570 팩스 : (042) 629-6574 <a href="http://www.kimcf.or.kr">http://www.kimcf.or.kr</a>
인쇄처	종려나무 (042) 255-0309

---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